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들어가는 말

2006년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의 연구는 장애아동이 폭력에 더 취약함을 지적하며, 관련한 자료와 통계의 부족,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따른 대응, 통합적 전략, 보호자 지원 등을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해결의 당면 과제로 삼았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아동이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취약성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더 특별한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은 장애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과 가정이 회복되며 가정의 기능이 강화되는 데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 연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장애 관련 전문가와 아동 및 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아동보호 전문가 간 교차시스템 협업(Cross-System Collaboration)을 필수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이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아동이 아동보호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 주 정부와 카운티, 지역사회 기반 기관들의 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원과 직원이 제한된 경우 기관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공식적이고 분명한 협업은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서비스 및 개입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피해아동의 보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현행 이원화된 보호체계 내에서 상호 협력적 업무 수행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인프라,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각 분야의 종사자들과 이 안내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현행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의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장애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협력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조차 공유가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업무 매뉴얼상 협업에 대한 지침사항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대응 또한 어렵습니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는 이 안내서가 마중물이 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아동의 권리가 보다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연대의 걸음에 많은 분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구 '통합놀이터법개정추진단')는 2018년부터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장애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캠페인 및 제도 개선을 펼쳐온 시민사회 연대로, 총 7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물리적·사회적·문화적 장벽이 차별과 폭력이 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함께하는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재단법인 동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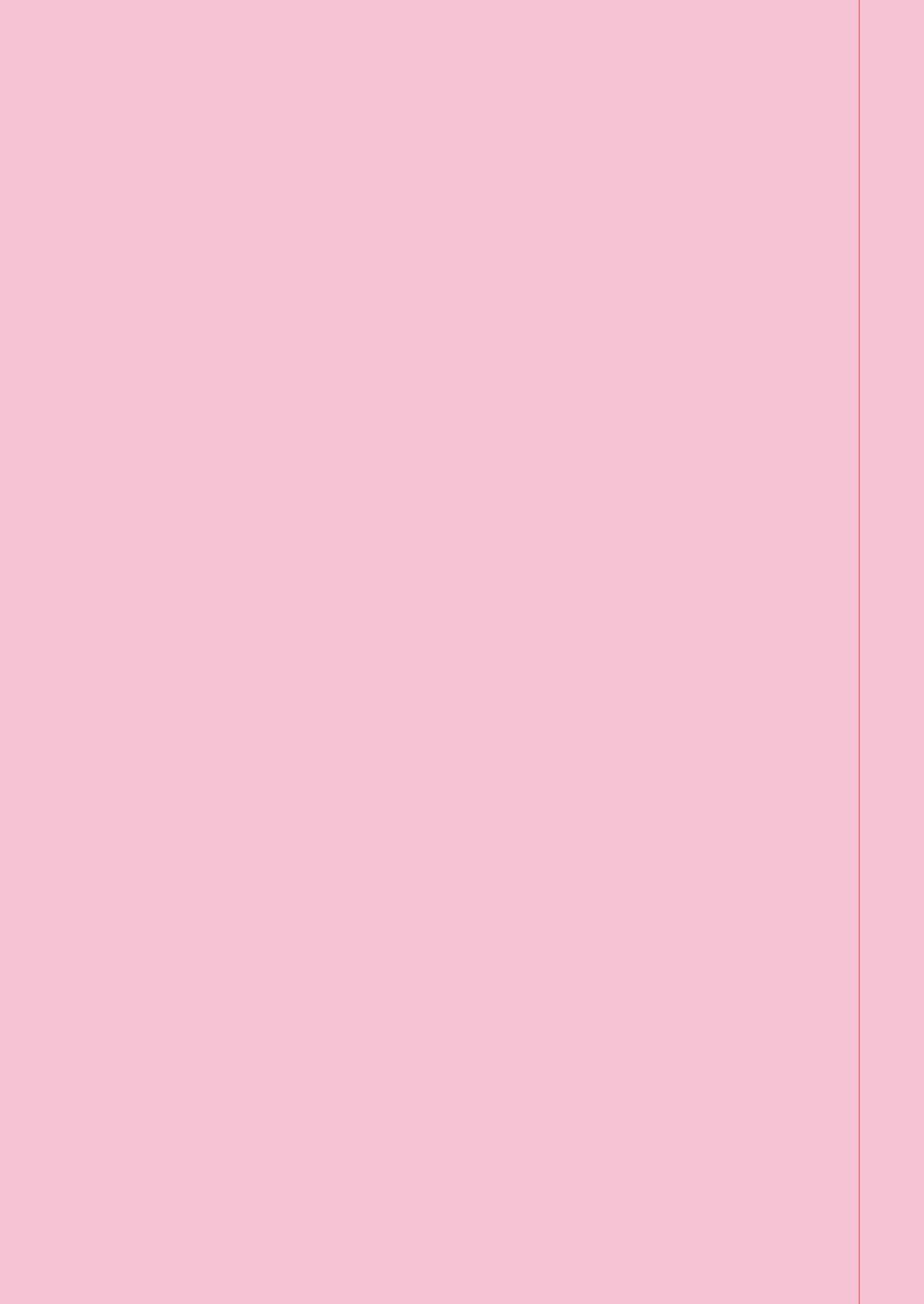
I. 장애아동	8
1. 장애아동의 이해	10
2. 장애아동의 특성과 지원	19

II. 장애아동학대 대응의 기본 원칙	30
1. 장애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32
2. 원가정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	33
3. 가정형 보호 우선의 원칙	34
4. 장애아동의 의견 존중 및 참여 보장	35
5. 예방적·통합적 접근	36
6. 협력적 접근	38

III.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40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42
2.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권리보호체계	47
IV. 장애아동학대 대응 업무 단계별 수행 절차	48
1. 장애아동학대 대응 개요	50
2. 장애아동 학대피해 지원 절차	51
V.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74
1. 행정절차상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	76
2. 형사절차상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	81
3.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사각지대에 있는 법, 제도 상황 및 이에 대한 제언	88
VI. 장애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소개	94

I.

장애아동



1. 장애아동의 이해

1) 장애의 유형

국내에서는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준하여 범위를 확대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학대나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서 장애에 대한 판단은 장애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의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은 다시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장애에 대한 제한적인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일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관련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관련 규정

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18세 미만의 사람 중에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록이 없는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고시나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

애등락을 중심으로 하는 범위의 규정은 장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으로 학대 등의 피해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해서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장애가 인지되는 경우 모두 장애아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신체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백반증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3개월 이상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장애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간장애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 난치성 복수, 간성뇌증 등 합병증, 간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	기관절개관 유지 24시간 인공호흡기 사용,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폐를 이식받은 사람, 늑막루
		장루, 요루장애	말달 공장루, 장루, 요루, 방광루,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 등 합병증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뇌전증	뇌신경세포장애로 일상생활 제약 성인뇌전증, 소아청소년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정신장애	정신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강박장애, 기질성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출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가교육자료』(202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는 15가지로 분류되나, 이 안내서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학대피해 장애인 현황보고서」에 따른 학대피해 장애인 주 유형 장애를 안내하고자 합니다.¹

(1)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란 무엇인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장애를 이야기합니다. 마비나 관절의 경직, 언어나 시각장애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뇌병변장애인의 판단 지표는 수정바델지수(BMI) 총 10가지 일상 수행 정도(개인위생, 목욕, 식사, 계단 오르내리기, 옷 착탈의, 대소변 조절, 이동, 보행 등)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뇌병변장애 유형

뇌성마비는 뇌의 운동 조절 중추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 및 자세의 장애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근육의 긴장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자발적인 움직임과 근육의 완전한 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대근육 및 미세 운동 발달을 지연시킵니다.

중증 두부 손상은 외상성 뇌 손상 범주에서 가장 흔한 후천성 장애입니다. 심각한 손상은 학습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성격 변화, 뇌성마비 또는 기타 신체장애를 초래할 수 있지만 외상성 뇌 손상은 별도의 장애 범주로 포함됩니다.

- ① 뇌성마비는 근육의 긴장 상태, 자세를 바꾸기 위한 조절 및 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 ② 뇌성마비는 비진행성이기 때문에 기능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 ③ 뇌성마비는 태어나기 전 혹은 아동기 초기에 뇌를 미성숙 상태로 만드는 손상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에 속합니다.

1. 주 유형 장애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발간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가교육자료』(2024)에서 일부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시각장애

• 시각장애란 무엇인가?

시각장애는 물체를 식별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시력(사람이 물체를 볼 수 있는 명료도,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과 시야(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점이 보이는 외계의 범위, 시야각) 결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처럼 시각손상 등으로 인해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시각장애 유형

시각장애는 시각을 일정 부분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교육적 정의로는 시각을 학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저시력장애인의 경우 시력과 시야결손의 정도에 따라 모두 보이는 정도가 다르며,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지만 책은 보기 어렵거나,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독립적 보행은 어려운 경우 등 그 상태가 매우 다양하며, 빛의 정도와 각도 등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장애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맹'은 시각을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교육적 정의로는 시각 활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청각과 촉각 등 다른 감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시각을 일상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빛과 형태 등을 완전히 감지하기 어려운 사람은 전체의 1% 정도이며, 전맹장애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각자의 잔존시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빛이나 형태 등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모두 다릅니다.

(3) 청각장애

• 청각장애란 무엇인가?

청각장애는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소리를 듣고 뜻 있는 말로 해석하는 중추기관에 이상이 생겨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정도에 따라 농인과 난청인 등으로 분류하며, 이외에 청력에 손실이 있는 모든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 청각장애 유형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난청인은 주로 큰 소리로 말해야만 들리는 경우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구화인은 청능훈련이나 발성훈련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 모양을 읽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음성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화’와 ‘수어’ 중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요하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있지만, 많은 청각장애인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인공와우를 이식한 경우 등 보장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각자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을 감지하는 등 청력의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청각 관련 조직과 기능의 이상으로 평형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청각장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4) 정신장애

• 정신장애란 무엇인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성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이 있는 경우 정신장애로 등록할 수 있으며, 최근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등도 장애등록이 가능하게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정신장애 유형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성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정신장애로 판단합니다.

투렛장애는 음성 틱이나 운동 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투렛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틱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으로 소리를 반복해서 내거나 신체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등으로 나타나며 두 가지는 각각 또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면증은 갑작스럽게 졸음에 빠져드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장애로 판단합니다.

(5) 발달장애

• 발달장애란 무엇인가?

발달장애는 말 그대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며 진행되어야 할 발달이 어떤 이유로 또래의 같은 연령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발달이 지연되어 천천히 진행되고 그런 과정에서 비장애인과는 달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과 훈련이 필요한 장애입니다. 국내의 경우 크게 인지와 판단의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와 관계맺기, 의사표현, 사회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성장애로 나누고 있으며, 지능지수 7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두 가지의 장애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2019년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편, 시행하면서 발달장애인의 경우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 발달장애 유형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지수(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연령별 발달 수준을 측정)를 통해 장애의 정도가 나뉘며, 일반적으로 이해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자폐성장애는 1943년 레오 카너(Leo Kanner)라는 의사가 자폐증이라는 병에 대해 명확히 분류한 증상으로 카너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해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관계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자폐성장애 중에 이런 장애도 있습니다

아스퍼거증후군과 같은 종류의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경우 지능이 또래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언어표현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 특성상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읽어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맺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학습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성 부족으로 실제 생활에서 타인들에게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서번트증후군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장애는 아니지만, 자폐성장애인 가운데 특별한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특징으로, 예를 들어 영화 <레인맨>의 실제 모델인 킴 픽은 미국 우편번호부나 수년간의 날짜, 요일 등을 쉽게 암산하고 암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번트증후군 역시 타인과의 관계맺기, 눈맞춤, 의사소통 등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 희귀난치성 질환에 의한 장애

국내에는 1250개의 질환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의하여 발행하는 장애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포함되는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중 일부는 여러 가지의 질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의 주요 유형(발달장애를 동반하는 주요 유형)

레트증후군의 경우 건강하게 태어나 1세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비틀기, 손뼉치기 등의 동작을 보이며 다리에 경련성 근육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후 자폐증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성장지연과 발작 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프라다-윌리증후군은 출생아 1만 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하며, 작은 키와 비만, 과도한 식욕과 근육긴장 저하, 지적장애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과도한 식욕은 낮은 신진대사율에 의해 식욕이 증가하고 포만감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2) 장애아동 지원제도

(1) 장애아동과 복지지원

장애아동의 경우에 출생 직후 각종 검사에서 장애가 발견되거나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등에서 발달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이후 장애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성장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12세 미만의 기간에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6세 이상~12세 미만의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12세 이상~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장애아동은 약 6년 간격으로 1~2회 재판정을 통해서 최종 장애를 확정받게 됩니다.

장애아동 지원제도

지원제도	대상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학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1만~22만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0~12세 미취학 장애아동	월 55만9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0~35개월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장애아동과 특수교육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은 장애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모두 관련 교육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선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지체장애인	- 시각장애
- 뇌병변장애인	- 청각장애
- 시각장애인	- 지적장애
- 청각장애인	- 지체장애
- 언어장애인	- 정서·행동장애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자폐성장애인	- 의사소통장애
- 정신장애인	- 학습장애
- 신장장애인	- 건강장애
- 심장장애인	- 발달지체
- 호흡기장애인	
- 간장애인	
- 안면장애인	
- 장루·요루장애인	
- 뇌전증장애인	

장애아동 교육과정은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학이 기본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2. 장애아동의 특성과 지원

1) 공통 고려사항²

(1) 장애아동의 특성 및 욕구 파악

아동의 장애 유형과 정도,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설비, 신뢰관계에 있는 보호자나 동행인 등 양육자에 대한 정보, 평소 증상 완화나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복용하는 약 등을 파악합니다.

이때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상 미등록 상태이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장애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나 경계선 지능장애와 같이 명확하게 장애의 특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등록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맞추어 매뉴얼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장애아동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아동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합니다.

(2) 심리적 불안을 낮추는 분위기 조성

장애아동 스스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낮고 상황 인지가 어려워 적절한 설명이 힘들 때도 많습니다. 또한 낯선 환경과 사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자와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미리 안내³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동이 미리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어 두려움과 강박사고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나타날 사회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데 그림, 사진, 기호와 긍정적인 짧은 문장을 활용합니다.

2. 이 부분의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2022),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2019)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발간한 一般社団法人 日本子ども虐待防止学会, 『障害児虐待予防マニュアル』(2020)와 厚生労働省 社会・援護局, 『市町村・都道府県における 害者虐待防止と対応の手引き』(2018)를 참고하였습니다.

3. 자폐성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 상황 이야기(Social Story)를 활용하여 심리적인 불안을 낮춥니다. 사회적 상황이야기는 상황에 대한 짧은 이야기(문장)를 통해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3) 신뢰관계자 동석 시 유의사항

아동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기 어렵고 논리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아동도 마찬가지이며, 장애 특성에 따라 동행한 양육자나 가족 외에도 활동지원사, 친구, 학교나 복지관 선생님, 인권단체 활동가 등 아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심리적 안정과 진술에 도움을 주는 신뢰관계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신뢰관계자란 범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증언 시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동석이 허락되는 사람을 말합니다.⁴

특히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청소년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범죄 피해자 등은 가족, 동거인, 변호사,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됩니다. 아동에게는 신뢰관계자라는 표현보다는 조사나 진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줄 수 있다고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이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신뢰관계가 있는 진술조력인과 함께 동석하도록 합니다. 진술조력인이란 미성년자 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피해자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⁵ 진술조력인이 동석하였더라도 대화의 방식이나 단어는 장애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면담이나 진술 등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아동 당사자입니다. 아동의 보호자, 활동지원사, 진술조력인 등 동석자가 함께한 경우에도 장애아동의 의견과 진술에 집중하고 경청합니다. 동석자에게 질문하고 동석자의 대답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한편, 발달장애아동은 질문에 대해 그대로 수긍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의사소통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를 좋아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지만, 동일한 질문을 “~를 싫어합니까?”라고 바꾸었을 때에도 그대로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형태를 사전에 잘 준비하고 답변에 대한 해석에도 주의합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참조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참조

(4) AAC 그림카드 등의 활용

장애아동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면담자와 장애아동 간 호칭이나 대화의 규칙을 정하고 아동에게 설명해주면 효과적입니다.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그림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AAC 그림카드는 발달장애아동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흥미를 가지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AC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등 전문적인 의사소통 지원기관을 통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⁶

아래 의사소통판은 감정에 대한 묘사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과 어휘를 그림과 쉬운 단어로 구성된 AAC 그림도구의 한 예입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나 상황, 감정 상태 등을 나타내도록 제작하여 활용하면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싫어요	 울어요	 부끄러워요	 놀랐어요
 슬퍼요	 지루해요	 미안해요	 무서워요
 화나요	 베졌어요	 피곤해요	 아파요

<그림>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판

출처: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http://www.scom.or.kr>)

아동에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단순화해서 전달합니다.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음성언어 외에 글자나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메모장이나 스케치북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6.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http://www.scom.or.kr>)에서 전국의 의사소통 지원기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타 기관 연계 시 유의사항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동이 기존에 이용하는 기관이나 학교 등과 연계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다만, 익숙하다고 하여 반드시 친밀하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아동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조력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에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동과의 관계성을 살피며 진행합니다.

다른 기관과의 연계 시 각 기관 담당자 조력자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이 혼란을 느끼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일관된 태도로 대응합니다.

(6) 보조기구 등의 제공

장애아동이 휠체어나 보조기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애아동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만지거나 위치를 옮기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허락 없이 휠체어를 밀거나 고정하면 안 됩니다.

청각장애아동에게는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속기)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보청기기 등을 지원합니다. 시각장애아동은 점자자료,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 프로그램 등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를 제공합니다. 청각장애아동 중에는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도 있고, 시각장애아동 중에는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전자도구 활용이 익숙한 아동도 있으므로, 아동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과 도구를 물어보고 지원합니다.

평소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또는 체력적으로 컨디션 난조가 오거나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나 설비가 있는지 물어보고 준비합니다.

(7) 적절한 시간 안배

장애아동은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장시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시로 컨디션을 확인하고 쉬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면담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휴식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2) 장애 유형에 따른 고려사항⁷⁾

(1) 지체장애아동

지체장애란 선천적·후천적 손상으로 몸, 팔, 다리 등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아동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기기(휠체어 또는 클리치 등)를 이용합니다. 지체장애아동이 특정한 장소를 이용해야 할 경우 보조기기의 종류를 확인하고 접근 가능한 환경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 확인합니다(예시: 자동문이 아닌 경우, 턱이 있어서 이동이 불편한 경우).
-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을 사전 확인합니다.

지체장애아동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보장구나 휠체어를 만지는 일은 삼가야 하고,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어도 컴퓨터나 휴대전화 사용 등을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움을 주기 전에 반드시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체장애아동이 이동할 때에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주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무거운 문을 열어주거나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것과 같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아동과 대화할 때에는 눈높이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자세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2) 뇌병변장애아동

뇌병변장애란 뇌의 중추신경 손상으로 몸이 떨리거나 경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동이 특정한 장소를 이용해야 할 경우 보조기기의 종류(전동휠체어 등)를 확인하고 접근 가능한 환경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뇌병변장애가 있을 경우 이동, 식사, 배변 등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속도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또한 예/아니오 등의 의사표현을 몸짓, 손짓, 눈의 방향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아동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7. 이 부분의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이해를 높이는 소통 가이드 소책자』(2003)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시각장애아동

시각장애는 눈으로 보는 기능이 낮거나(저시력)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전맹)를 말합니다.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도 있으며, 큰 글씨나 명암은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동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아동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게 될 경우에는 화면해설이 지원되는 영상을 준비하거나, 사전에 영상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등을 위하여 시각장애아동이 문서를 활용하여야 할 경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TXT, HWP, WORD 등 문서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각장애아동의 이동을 지원할 때에는 팔꿈치를 잡도록 하고, 주변 상황을 설명하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에는 지시대명사(이것, 저것)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4) 청각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은 귀로 듣는 기능이 낮거나 완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경우 주변 소음도 증폭되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중에서는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도 있으며, 입 모양을 보고 이해하거나 인공와우로 듣기도 하므로 시각적 정보(표정, 동작 등)와 함께 입 모양이 잘 보이도록 말하고, 중요한 전달 사항은 문자나 그림을 이용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에는 청각장애 아동이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언어장애아동

언어장애는 언어에 대한 이해 또는 발성 문제로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언어장애아동과 의사소통을 할 경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AAC(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다양한 이유(구강부위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심리적 원인 등)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인에 따라 해당 장애 유형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지적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은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안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지적장애아동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천천히 분명하게 표현하고,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워할 경우 반복하여 설명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AAC 자료 등 의사소통 지원수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자폐성장장애아동

자폐성장장애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천천히 쉽게 설명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AAC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폐성장장애아동은 낯선 환경(사람, 장소, 행동 등)에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자폐성장장애아동을 만날 때에는 서두르지 말고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자폐성장장애아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도전적 행동(challenging behavior)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중재 매뉴얼⁸⁾을 미리 숙지하여 대안적 행동을 지도하는 중재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폐성장장애아동에게는 하지 말라는 부정어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 긍정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같은 행동이나 말을 반복하는 상동 행동에는 일일이 반응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정신장애아동

정신장애란 감정조절 및 판단이 미숙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심리적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아동의 경우 학습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 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배분할 필요가 있고, 여러 의미가 있는 표현이나 은유, 비유 등을 사용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행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2020)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9) 신장장애아동

신장장애란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로서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하고, 과일이나 야채의 경우 신장에 무리가 되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신장장애아동의 식단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투석하는 경우 주 2~3회 평균 4시간의 투석 시간이 필요하고, 혈액투석을 하는 아동의 팔이나 배에 힘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0) 심장장애아동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므로 식단 선정 시 짜거나 단 음식을 피하도록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격한 활동이나 운동은 자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호흡기장애아동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 이상으로 만성적인 기능저하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환기가 잘 되고 숨쉬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천명음(쌩쌩거리는 소리)을 낼 경우 피곤한지 물어보고 싶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호흡기장애아동이 있는 장소에서는 향수나 향초, 스프레이 등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향류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 안면장애아동

얼굴, 목 부위에 드러나는 흉터 또는 상처가 있거나, 함몰된 상태가 있는 경우로서 신체기능과 의사소통에는 불편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면장애가 있는 아동을 유심히 보거나 모자, 장갑 등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13) 장루/요루장애아동

장루/요루장애아동은 대변 혹은 소변을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화장실 이용 횟수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장애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특히 탈의를 해야 하는 활동은 장루·요루 주머니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4) 뇌전증장애아동

뇌전증장애란 신경세포 기능 이상으로 일시적인 마비 혹은 전신경련이 되풀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가 있는 당사자는 빠르게는 수일 전부터, 늦게는 수초 전에 전조증상을 느끼므로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아동이 전신발작을 하는 경우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며, 갑작스러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머리를 보호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낮은 베개 또는 쿠션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전신발작이 일어날 경우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모두 치우고 지켜 보되, 만약 숨을 쉬지 않거나 10분 이상 경련이 지속되면 119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장애아동 가정지원

(1) 장애아동과 가정이 함께 보호받는 양육환경

장애아동이나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대의 요인은 복잡적이지만 그 가운데서 장애가 있는 아동은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고, 부모나 양육자, 때로는 형제나 자매가 학대행위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돌봄 관점에서 장애아동의 문제는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장애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모든 아동 관련 부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과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가족지원을 통한 학대 예방

장애아동 학대피해의 원인이 가정에 있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나 가족구성원 등 양육자가 장애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 학대행위자인 양육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나 양육환경이 열악한 경우, 부모 한쪽이 다른 부모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가정 내 환경으로부터 아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양육자 본인이 성장과정에서 학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응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 양육자의 양육 능력이나 심리상태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데 따르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돌봄과 육아에 따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장애아동 당사자를 포함하여 가족들이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이 전적으로 가정에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부담감과 피로감이 장애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와 전문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 및 부모에 대한 교육, 훈련 등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양육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지원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학대 요인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의 방향성

일본 아동학대 방지 매뉴얼에서는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아동과 그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래의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의 양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칙 1. 아동의 성장을 지원

- 장애아동은 성인과 아동 간의 애착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아동과 동일한 지원이 필요함.
-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관(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뢰관계의 기초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 발달 문제가 있는 어린이의 경우 신중하게 수행해야 함.
- 이 시기에 마음속에 의지할 수 있는 양육자의 존재가 생기고, 타인은 적이 아니라 응원해주는 존재라고 느낀 장애아동일수록 예후가 좋음.
- 치료교육은 장애를 치료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안심감, 안전감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아동이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며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발견하고 성공 경험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함.
- 그 결과 아동이 즐겁게 '좀 더 하고 싶다', '한번 더 해보고 싶다'고 느끼는 경험과 성취감이 향상됨.
- 장애아동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원칙 2. 사회적 모델로서의 가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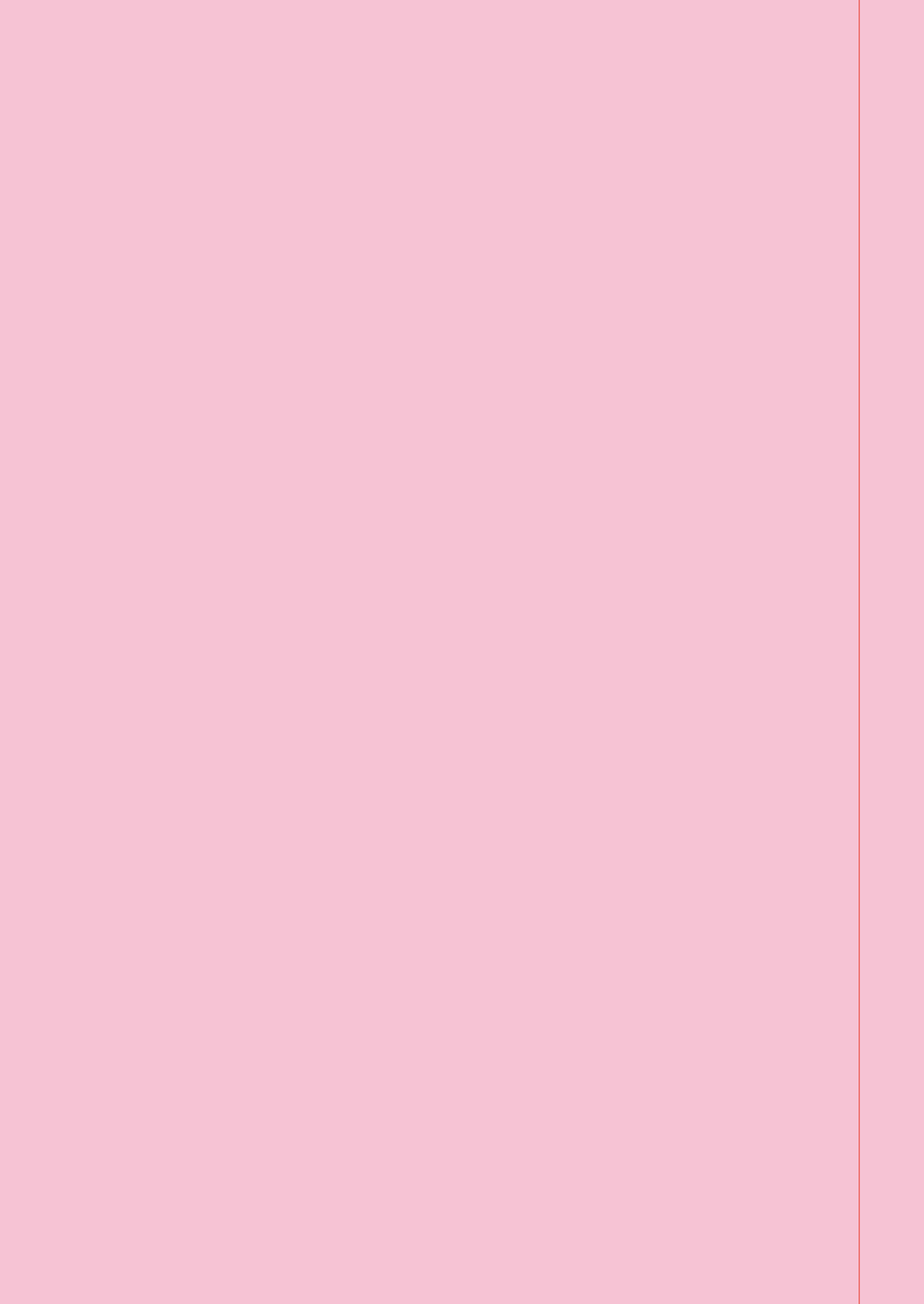
- 아이를 구하려면 가족을 구해야 함.
-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특히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 매일 고민해야 하고 자녀 양육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임.
- 지역 아동발달지원센터는 다양한 단체와 연계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아동 양육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발생하는 갈등과 양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함.
-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능부전가족(機能不全家族)⁹에서 성장해 트라우마를 가진 경우도 적지 않음.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
- 따라서 장애아동 양육지원은 비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음.
-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발달지원센터나 시설에서의 발달지원과 가족지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며 학대 예방으로 이어짐.
-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의 지혜와 힘, 사랑, 미소가 필요하다."

출처: 一般社団法人 日本子ども虐待防止学会, 『障害児虐待予防マニュアル』(2020), p.6.

9. 기능부전가족: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 부모의 약물중독, 학대, 빈곤 등으로 가족이 본래 가지는 보호, 사회화, 정서적 안정, 유대감 등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II.

장애아동학대 대응의 기본 원칙



1. 장애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¹⁰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¹¹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¹²에서는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¹³ 장애아동학대 대응 절차에서도 아동보호의 전 과정에 걸쳐서,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 아동을 만나는 모든 주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장애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원칙은 모든 장소에서 아동의 보살핌과 보호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는데, 장애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여타의 시설에 특별히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은 제반 기준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아동의 안전·보호·보살핌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1의 고려사항은 예산을 할당할 때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¹⁴

아동 최상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과 보호자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간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서도 아동의 보호는 최대한 아동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보호자가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아동의 배치를 요구할 경우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배치 요구를 수용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보호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¹⁵

10.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으로 대한민국은 1991년 가입하였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1.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12.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대한민국이 2008년 가입하였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제1항

1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 para. 29~30.

1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2022), p.6.

2. 원가정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발달과 안녕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¹⁶ 「아동복지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¹⁷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장애아동은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지고 양육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가족이 모든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따라 장애아동이 원가정에서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보호 체계는 장애아동 최상의 이익의 관점에서 원가정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야 합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과 부모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기 의사에 반해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¹⁸ 또한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¹⁹에서는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 가정으로 돌아가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원하되, 그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아동의 온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장려한다는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대안양육 방식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도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 유지 및 회복을 도우며 장애아동과 원가정의 재연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서도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하여야 하고,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²⁰

1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17.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1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19. 영문명은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으로 200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2022),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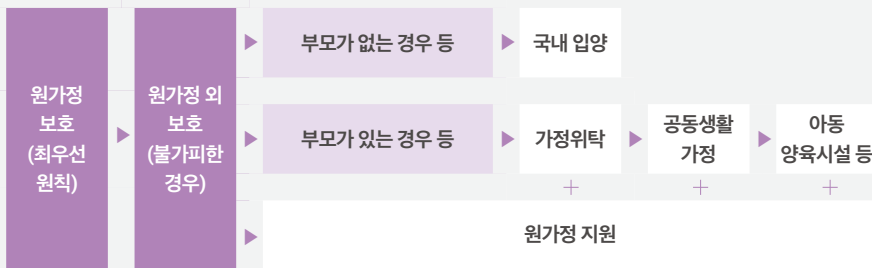
3. 가정형 보호 우선의 원칙

장애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보호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양육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과 같은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원가정 보호 원칙과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²¹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다음 순으로 조치 고려

☞ 국내 입양(부모가 없는 경우 등) →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조치 실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시설에 수용된 장애아동의 숫자가 매우 많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시설 수용이 아동의 위탁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장애아동이 정신적·신체적·성적 또는 여타 형태의 학대, 그리고 방치와 학대에 더 취약한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우려를 밝히고 당사국이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 해,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시설위탁 방법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²² 또한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에서는 시설 양육의 활용은 그 환경이 아동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이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²³

2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2022), p.6.

2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 para. 47.

2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4. 장애아동의 의견 존중 및 참여 보장

장애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9호에서 장애아동이 이러한 의견을 표명할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아야 하며, 가족과 전문가가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법적 절차는 장애아동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해야 하며, 아동 친화적이고 아동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장애아동의 피청취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는 아동폭력 피해자를 위한 아동법원 또는 가정법원 및 형사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장애아동의 평등하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경찰청, 사법부, 검찰청 내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1.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대리인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5. 예방적·통합적 접근

장애아동학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설 내에서의 학대와 가정 내에서의 학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시설 내에서의 학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아동학대 및 일반 폭행·협박이 포함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장애아동학대는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내 학대에서는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학대를 받기도 하고, 시설 내 학대 아동들은 시설에서 지내다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 다시 학대가 이루어지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복잡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장애아동학대의 경우 우발적인 학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연구는 또한 장애아동과 가족의 고립, 차별,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의 학대 위험 요인을 살펴 이에 따른 예방과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도 「장애인학대의 방지,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학대에 대한 정책이 차별이 아닌 학대 방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학대의 대응체계는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장애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폐성) 장애아동은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아동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 예방 대책과 피해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지원정책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빈곤가정) 학대피해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2.6배 많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경제적으로 더 빈곤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빈곤율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어서, 빈곤한 장애아동이 빈곤하지 않은 장애아동에 비해서 학대에 더 취약하다고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비중) 장애아동은 전체 아동에 비해 부모에 의한 학대의 비중이 낮고 타인이나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 비중은 높습니다. ①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② 장애아동의 높은 시설 거주 비율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③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감수성이 낮아 사회적으로 학대가 용인되는 경향도 그 이유로 추측됩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판결문에서 법원은 범죄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한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예방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의 필요성은 비단 장애아동학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이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장애아동보호 책임 이행이 더욱 무겁습니다.

출처: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연구』(2022)

6. 협력적 접근

장애아동학대 대응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는 장애와 아동, 학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고, 사회복지, 수사, 사법절차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을 통해 장애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이러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장애아동과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또는 아동학대판단회의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 협력·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아동', '장애아동학대', '장애아동 보호'에 특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동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전문 인력의 협력은 장애의 정도에 따른 연속적 보호와 회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돌봄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아동이나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아동이 아동복지 서비스에 접촉하는 경우 아래의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주정부와 카운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복지 서비스(Child Welfare Services)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Specialty Mental Health Services)

재활 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지역센터(Regional Center) - 어린 아동을 위한 서비스(Early Start Services)

지역센터(Regional Center) - 후견인 서비스(Lanterman Act Services)

캘리포니아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 특수교육 서비스(Special Education Services)

캘리포니아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 위탁 청소년 서비스(Foster Youth Services)

참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협력 접근

출처: System of Care - 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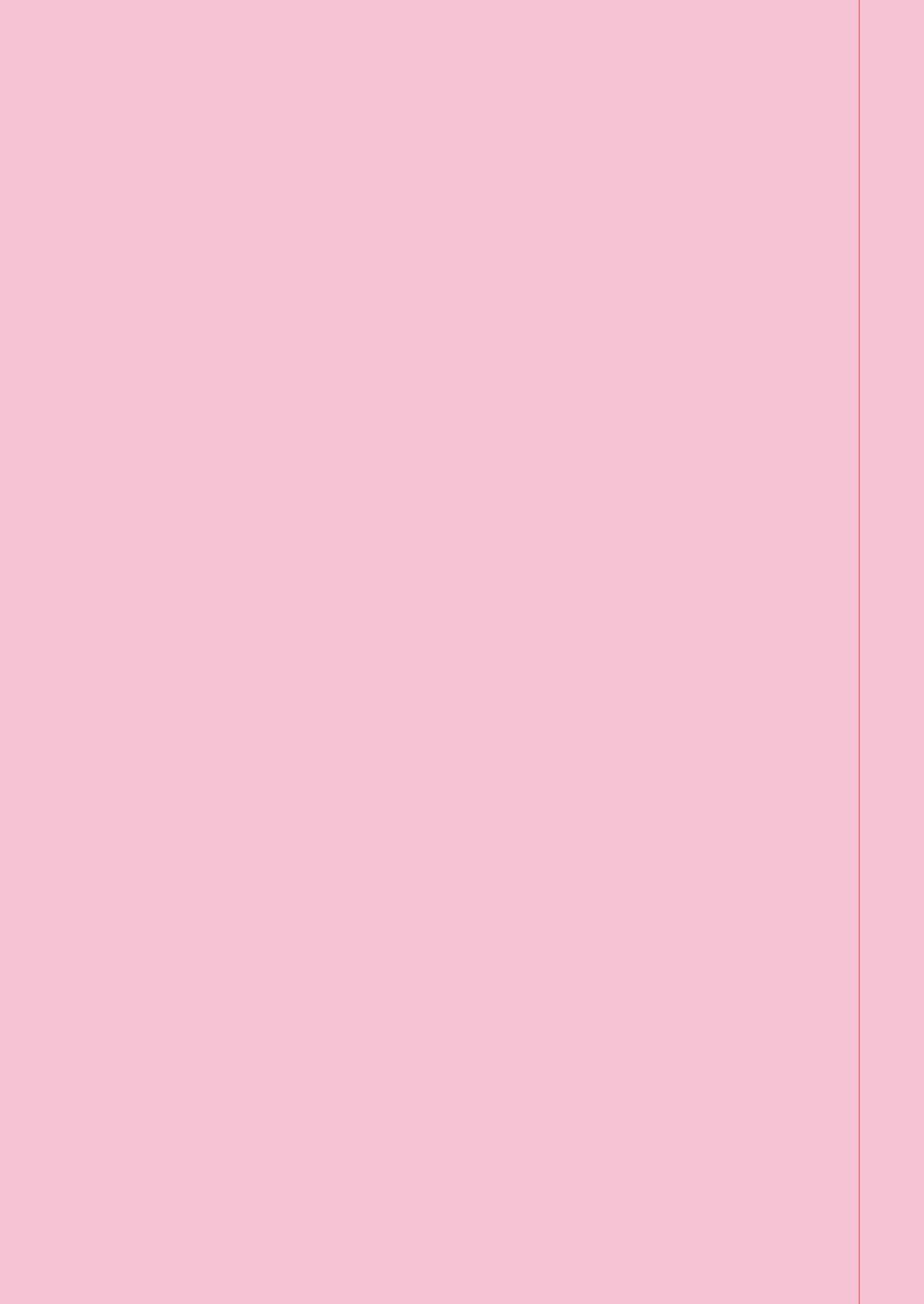
CPS 워커들의 장애 관련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CPS 워커들이 장애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CPS 워커는 장애 서비스 제공자, 정신건강 상담사, 공중보건 간호사, 특수교육 제공자 및 장애 옹호자와 같은 장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공식적 협업, 비공식 협업 모두 중요하지만, 협업이 공식화될수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정부부서/부처 간의 협업을 정부의 주요 목표와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돌봄 시스템(system of care)과 돌봄의 연속성(continuum)이 그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를 예로 소개했듯이 정부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CPS에 들어오는 경우 교육과 재활 그리고 정신건강 부서들과 협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교차시스템(cross-system) 협업의 예로 텍사스주의 경우에서도 소개되었듯이 발달장애아동이 위탁보호에 배치되는 경우, CPS 워커는 발달장애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함이 정책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협업이 증가하면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서비스 및 개입을 방지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의미 있는 협업에는 서로 다른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조치가 포함되는데, 협업의 또 다른 장점은 장애아동이 아동복지 시스템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업은 아동학대 조사부터 위탁보호, 입양, 보호종료 등 CPS 절차(procedure) 전반에 해당된다.

출처: 세이브더칠드런-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2024)

III.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²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하여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의 존중 및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행위 주체와 유형을 넓게 인정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복지적 개입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인 규정이나 판결이 아동에 대한 폭력의 사용을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이 어디에 있던 학대행위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아동은 모든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폭력에 특히 취약한 아동집단으로서 가족, 학교, 각종 시설, 대안적 보살핌,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모든 상황에서 정신적·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학대에 누구보다도 더 취약합니다. 가족에게 추가적인 물질적·재정적 부담을 준다거나 보살핌에 수반되는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신체적·정서적 폭력에 시달리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등의 장애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폭력적인 훈육이 용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의 존중을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폭력로부터 장애아동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한 모든 처벌’을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로 정의하며,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 등도 비물리적인 형태의 처벌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²⁵ 이러한 폭력(학대)행위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인 행동이나 개입과 분명히 구별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²⁶

2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 para. 11~14.

26. 이하에서 각 유형의 정의와 예시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신체적 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²⁷
-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판례에서 신체적 학대가 인정된 사례

- ✓ 봉숭아 꽃가지로 만든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2001고단1444)
- ✓ 회초리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2001고합828)
- ✓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는 신체의 손상 행위를 한 경우(2006고단1832)
- ✓ “몸이 약하니 태권도를 배워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기대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양발로 강제로 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 근육파열 및 슬내장상을 가한 경우(2006고단118)

27.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2)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²⁸
-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예시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집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례에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 사례

- ✓ 음식물 수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12세 여아에게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음식물 수거 일을 돕도록 강제하고, 음식물 수거 일을 돕는 날에는 오후 3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10~20kg가량의 음식물 수거 통을 나르는 일에 종사시킨 행위(2012고단2866)
- ✓ 육설("야 도둑년아, 너 mp3 어디서 났어", "너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한다. 언어치료가 필요하다. 다리병신, 장애인") (2008고단1435)
- ✓ 부모가 13세, 9세의 여아 자녀가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과는 인연이 다 되었으니 나가 살아라. 다시 돌아오면 바다에 던져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 내버려두고 간 행위(2008고단5501)

28.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3)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²⁹⁾
- 성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판례에서 성적 학대가 인정된 사례

- ✓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8세) 앞에서 흔드는 행위(2004고합361)
- ✓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15세)를 강제 추행하여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 남자애들 만나는 건 좋은데 질투 난다. 엄마만 아니면 넌 이미 내 거다”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2004고단5091)
- ✓ 예배실에 많은 사람이 있어 피해자(15세)가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한 행위(2005고합20)
- ✓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행위(2003고합173)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4) 유기 또는 방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학대행위³⁰
- 유기 또는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집에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판례에서 유기 또는 방임이 인정된 사례

- ✓ 5세 아동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일간 방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않은 행위(2004고단106)
- ✓ 화상을 입은 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2004고합1491)
- ✓ 자녀 6명(13, 12, 9, 7, 6, 5세)을 단전·단수된 집에 둔 채 만언니에게 동생들을 돌보게 하고 전국을 트럭을 타고 돌며 매주 1, 2회만 집에 잠깐 들러 생활비로 2만~3만원을 만언니에게 주는 것 외에는 자녀들의 식사와 의복 등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행위(2001고단78)
- ✓ 발달장애 1급 장애아인 피해자(7세)를 사람이 없는 예배당 안에 버려둔 채 떠난 행위(2005고단3269)

30.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2.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권리보호체계

현재 학대피해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 장애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성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동의 학대 경험은 비장애아동보다 높게 나타납니다.³¹ 장애아동 양육에 있어 필요한 지원이 전무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장애아동의 부모가 심리적·사회적·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아동이 부모에게 많이 의존할수록 학대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국가의 지원체계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³² 장애인학대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학대피해 장애인은 아동과 성인 모두 다수의 피해자가 종종 발달장애인에게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³³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친권 제한과 같은 민사적 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적·교육적·심리적 접근이 긴밀하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³⁴ 이런 점에서 성인 장애인 피해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할 때에는 두 가지 방향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장애 관점을 보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아동 관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현재의 지원체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장애 관점을 보완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앞서 보았듯, 생애주기로서 아동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제재도 중요하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제한과 같은 민사적 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적·교육적·심리적 접근이 긴밀하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이에 물적 여건의 차이가 큰 문제도 있습니다. 기관의 수, 종사자의 수가 더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 시스템 안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매 단계에서 장애를 고려하도록 구체적인 항목들을 두고 있습니다.³⁵

31. 박명숙,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2002), p.312.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최복찬·김유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사례 분석을 통한 장애아동학대 고찰'(2016), p.101.

32. 김요섭, '장애아동학대 실태, 원인 및 예방 방안 연구'(2023), p.14.

33. 오현숙, '장애아동학대 현황, 연구동향 분석 및 제도·체계 개선 연구'(2022), p.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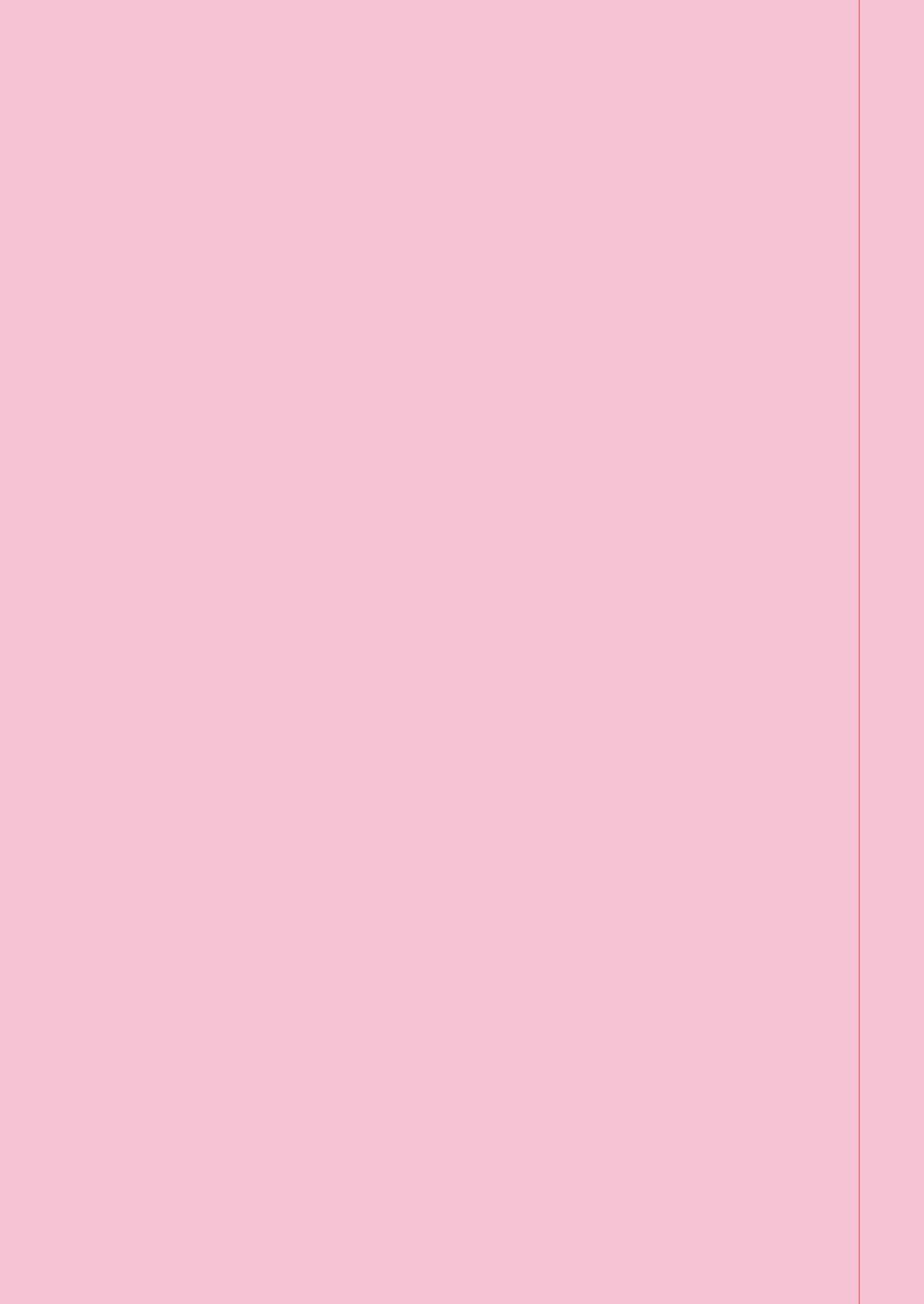
34. 광병선,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2008), p.428. 조영숙, '장애아동학대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2019), p.255.

35. 세이브더칠드런·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2024)

IV.

장애아동학대 대응 업무 단계별 수행 절차³⁶

36. 이 장은 세이브더칠드런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박명숙 교수)이 함께 진행한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 방안 연구』(2024)의 'III. 국내 장애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분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장애아동학대 대응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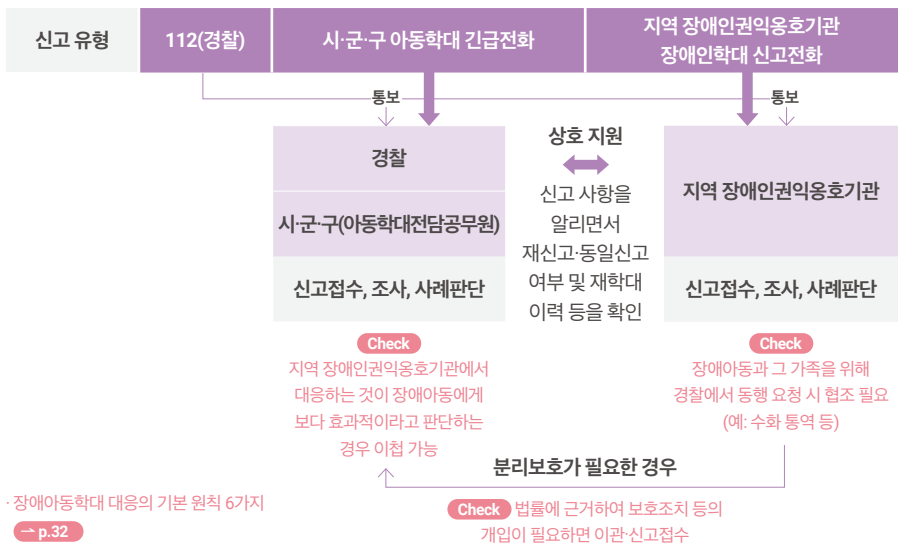
기존의 장애아동학대 대응업무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회복에 있어 각 대응기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분석 결과 업무대응 수행 절차에 따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동대응의 흐름 파악이 어렵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관련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간의 정보공유, 통보 및 협조요청 등의 역할과 내용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상 어려움과 한계로는 권장사항에 불과한 동행 출동에서의 협력, 모호한 협업기관의 역할 지침, 장애아동의 특수한 요구에 부합하는 구체적 업무 지침 부재 등이 지적됩니다.

이에 본 안내서는 장애아동학대의 초기대응부터 사례종결까지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력적 접근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업무 단계별 수행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2. 장애아동 학대피해 지원 절차

아동학대 대응 절차는 비사법적 개입을 통하여 학대행위자를 교육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피해아동의 환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한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학대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행위자를 분리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행해지고,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아동보호처분 또는 형사고소 등이 이루어집니다.

1) 신고접수



신고 접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자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한다면 신고접수 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현장 조사에 큰 도움 · 충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장 조사에 필요한 협조 사항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명확하게 요청 필요
	파악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장애 관련 내용(장애 유형, 정도(의심), 안전 및 보호능력 등) 및 신상정보 · Check 다양한 이유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과 가족도 존재, '특수교육대상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방법 ·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하여 학대행위(의심)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장애 여부도 반드시 파악 필요 · 학대의심 상황(발생 장소, 피해 상황 등) 등 특이사항

(1) 신고접수 방법 및 경로

2023년 정부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에서 장애아동 학대의심 신고 시,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절차에 따라 신고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 112 신고 후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된 경우, 원칙적으로 시군구가 주된 기관으로 대응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우선 시군구가 신고접수, 조사, 사례판단 등 절차를 진행하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군구의 학대의심 또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이때 시군구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협의해 해당 사건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대응하는 것이 장애아동에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된 기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외적으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접수, 조사, 사례판단 등 절차를 진행하고, 시군구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아동 대응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이 112 신고접수 건을 시군구·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면 시군구·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반드시 상호 간 신고사항을 알리면서 재신고·동일신고 여부 및 재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합니다. 이때 경찰과의 업무 협조가 중요한데, 경찰은 장애 관련 전문기관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예: 수화 통역 등) 동행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한편,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접수한 시군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각각 주된 기관으로 대응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접수된 장애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로 이첩하지 않고,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신고접수된 장애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이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접수한 장애아동에게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가 되었더라도 지자체로 이관·신고접수합니다. 장애아동을 분리함에 있어 지자체 보호조치, 일시보호조치 등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접수한 장애아동 학대사례에서 장애아동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동행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경찰과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는 현장에 동행해야 합니다.

(2) 신고접수 시 파악해야 할 정보

신고접수 시 파악해야 할 정보 중 인적사항 및 현재상황에 관한 정보에는 장애 유형, 정도, 안전 및 보호 능력 등의 아동의 장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이 신고된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피해(의심) 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신상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고내용(학대의심 상황),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장애아동 또는 장애의심아동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체크리스트

Q. 신고자는 장애아동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장애아동의 경우 주변에 다양한 관련자가 있으며, 사회적인 통념상 관련자들을 선한 보호자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통념으로 인해 제대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신고자가 가해자와의 여러 관계 안에서 의도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신고자의 의도를 기본적으로는 신뢰하지만,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혹시 존재할 수도 있는 다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장애아동은 어떤 보장구를 사용하나요?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인가요?, 장애아동이 장애진단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아직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의 장애는 영구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가정환경 등 다양한 사회환경과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이후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장애 영역이 있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도 이후에 많은 부분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의 장애를 단정적으로 혹은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장애아동 각각의 성장환경과 장애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개별적 특성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학대행위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장애아동의 경우 가해자도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 사건을 파악할 때 가해자의 장애 유무를 확인하면 이후 사건 조사 과정이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장애아동은 어디서 주거하고 있나요?

장애아동의 경우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으며, 주거형태가 결국 현재 양육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이에 장애아동이 장애인 거주시설, 비장애인 보육시설, 지역사회 원가정, 지역사회 원가정 이외 보호가정, 특수학교 기숙사, 기타 종교시설(기도원 등) 중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주거형태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2) 조사



우선 기초정보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초정보란 피해(의심)아동 및 아동학대(의심)자의 가족 특성(한부모, 재혼, 조혼, 입양, 다문화, 장애 여부 등), 인적사항(주민등록 관련 정보, 국적, 출입국 기록 등), 수급 정보, 복지서비스 제공 이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력, 아동학대 재신고 이력, 어린이집 출결 상황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장애 여부 및 유형과 정도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장애 여부 및 장애아동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 또는 장애아동 조사 시 학대로 의심되는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병원 진료 의뢰(X-ray 촬영 등 과거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면밀한 확인)가 필요한데,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 및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장애 관련기관으로의 연계 및 공동조사를 적극 고려하도록 합니다.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동행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역시 아동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 지자체에 동행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동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지원을 위해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피해(의심)아동으로부터 상처·멍 등 신체적 상흔이 발견되면 ① 아동의 연령, ② 상흔 발생 신체 부위(위치), ③ 발생한 경위 확인, ④ 멍의 색깔을 필히 관찰하고 조사자는 학대행위(의심)자로부터 상흔의 발생 시기, 경위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학대행위(의심)자가 상처에 관하여 모른다고 하는 것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며, 설명되지 않는 상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방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 장애아동을 면담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여기서 장애아동이라 함은 명확하게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 정도를 검사하여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을 널리 포함합니다. 특수교사와 같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아동의 인지적·사회적·행동적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을 인터뷰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의 일부입니다. 특히 의사소통 스타일, 면담 공간 및 환경, 사전 정보 수집 등과 같은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 인터뷰 시 고려사항

장애아동을 인터뷰하기 전에 인터뷰 진행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아이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시도를 한다. 종종 보호자, 교직원, DHS 사회 복지사들(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hild Welfare Personnel)은 아동의 강점에 대한 통찰력과 아동과 의사소통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
- 똑딱거리는 시계나 수많은 동물 인형 등 실내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를 제한하라.
-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에게 면담 공간을 보여주는 등 면담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라.
- 아동이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문의하라. 장애아동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보고, 인터뷰에 가장 적합한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파악하라.

출처: Oregon Department of Justice Crime Victim and Survivor Services Division, Oregon Interviewing Guideline(2021)

면담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및 질문 형식 등에 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이하는 국내 논문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종사자들이 초기 진술을 확보함에 있어 특히 발달장애아동과의 면담을 낮설어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요약

- 면담자는 피면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피면담자가 이미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 정보를 묻는 반개방형 형태의 질문을 제공해야 한다.
-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일방경을 통해 진행 과정을 관찰하면서 질문의 복잡성과 암시성 등을 살피는 것이 좋다.
- 관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구체적이며 명시적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 아동이 이야기한 인물이나 장소, 위치, 물건,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대상을 지칭할 때 대명사를 쓰기보다는 명확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경향도 있으므로 아동이 생소한 단어를 말했을 때는 그것의 의미에 대해 재질문해야 한다.
- 자폐스펙트럼장애 피면담자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회상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 수사면담에서 피암시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도 질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은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의 이행을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면담 전 피면담자에게 면담 동안 무엇을 할지 미리 알려주고 가능한 한 계획되지 않은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수사면담은 정서 질문을 포함하기에(예: 그때 무서웠니?, 그 사람이 화나 있었니?)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사면담에서는 아동이 느낀 감정이 아닌 사건의 구체적 정보를 획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아동이 보고한 내용(행동, 인물, 장소 등)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론

1. 면담자는 수사면담 전 아동의 자폐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획득하여 아동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면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이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눈을 맞추지 않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등의 특이 행동을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하며, 아동의 언어능력에 적합한 질문을 해야 한다.



3. 일반 아동 면담과 마찬가지로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질문은 피해야 한다.
4.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은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서와 관련된 질문은 최소화하고, 아동에게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감각적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 아동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5.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은 얼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진이나 인물 확인 절차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이승진·권미경,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사면담 시 유의할 점에 대한 고찰'(2019)

아울러 발달장애아동에게 폭행 등의 신체적 학대가 있었던 경우 그 부위 및 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체 그림(해부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체 그림은 기억 단서로 인해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쉽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부학적 그림을 다음의 예와 같이 계획적이고 목적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성인을 조사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 아동은 자신의 학대 사실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설명하는 언어가 부족하지만 그림에 신체 부위를 표시할 수 있다.
- 아동은 그림을 사용하여 자신이 맞은 모든 부위를 표시할 수 있다.
- 아동은 면접조사에서 '질(여성의 생식기)'이라고 진술했으나 실제 그림을 사용할 때는 항문 삽입을 나타낼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실 이야기를 만들어 어린이에게 등장인물이 진실을 말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예: 어린이에게 물건을 식별하라고 요청하고, 다른 어린이가 그 물건을 다른 것으로 식별했다고 말하고, 그 아이에게 다른 어린이가 진실을 말했는지 묻는다).

출처: Office for Victims of Crime, Child Victims with Disabilities: A Guide for Prosecutors(2022)

덧붙여 장애아동 진술 확보를 위해 다음의 제도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심리에 있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문할 때 본인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돌래,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그 의사소통을 보조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꼭 등록장애인일 필요는 없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지원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및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하고, 수사기관 내지 법원과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한 후 실제 조사 및 증언 시 진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신고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의심)아동 보호에 집중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 사례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내용에는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신상정보, 학대 발생 여부 관련 상세정보, 피해(의심)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고, 이때 아동학대 조사 체크리스트가 활용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학대행위(의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단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 관해서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 및 설문지를 활용합니다. 장애아동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동행을 요청하거나 유선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Q. 가족구성원 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장애아동학대사건에서 가족구성원의 장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또는 부모가 장애를 가진 경우가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장애 유무가 학대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이기에 이에 대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애아동의 의사 확인은 가능한가요? 장애아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사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장애아동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 유형에 따라, 또 아동이라는 특성에 따라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소통의 어려움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환경 또는 사건 과정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언어장애나 청각장애 등 신체적 문제 때문인지, 또는 인지와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은 무조건 인지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원인이 모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장애아동은 일상 지원을 누구에게 받고 있나요?

학대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이 일상생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학대사건의 배경과 환경을 파악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가족이 지원해왔는지, 활동지원사 등 다른 사람의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후에 분리조치 등이 진행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미리 확인해놓는 차원에서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Q. 부모 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무엇인가요?

부모의 장애에 맞는 의사소통 조력이 필요한가요?

① 부모가 한쪽 또는 모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청각장애, 언어장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 등의 조력지원자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 조사자가 소통에 대한 지원인력 없이 임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장애를 가진 부모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차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가 한쪽 또는 모두 발달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아동학대사건에서 발달장애아동의 부모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달장애인 부모는 인지와 판단의 정도에 따라 사건 조사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과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인 소통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네'라고 답변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소통이 어려울 경우 장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례판단

사례판단 주체		사례판단 척도	사례판단 유형	
사·군·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지역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아동학대 사례	일반 사례
<p>Check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또는 추천하는 전문 인력 포함 필요</p>	<p>Check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추천하는 전문 인력 포함 필요</p>	<p>· 현행 '아동학대 판단척도'를 장애 아동 대상 학대사건에 적용할 때 아래의 사항 확인 필요</p> <p>- 피해아동(x_1)과 학대행위자(x_2)의 장애 여부 및 수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유', '종합의견'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설명 필요</p> <p>Check 학대행위자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보호자로서 해야 할 가중된 역할, 재정적 부담감, 좌절, 죄책감 같은 심리적 반응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며, 이는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에도 고려</p>	<p>Check 장애아동학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례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장애아동 양육지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p>	
<p>사례판단 방법</p> <p>현장판단 자체사례회의</p> <p>통합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p>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일반 사례(예: 드림스타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판단하며, 이때 '아동학대 판단척도'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현행 척도는 피해 장애아동이나 장애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해외 자료를 참고하여 장애아동학대의 안전과 위험 평가를 할 때에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아동학대 안전 및 위험 평가 관련 해외 자료

• 구조화된 의사결정(SDM, Structured Decision Making®)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hild-welfare-protection/structured-decision-making>)

- 미국 전역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식이며, 다양한 연구와 모범 사례를 결합해 미국 CPS 워커에게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있음. 사례 계획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의 욕구 및 강점을 파악하고 고려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아동의 장애 유무와 의심에 관하여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전문가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음.

• ARIJ Safety Assessment

(<https://www.mdpi.com/2076-0760/10/5/167>)

- 장애아동에만 한정된 자료는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임. 특히, 가족구성원의 장애 여부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안전 및 위험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음.

• CERAP Safety Determination Form

(<https://www.formalu.com/forms/40584/cerap-safety-determination-form>)

-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양식임. 총 16가지로 아동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Yes' or 'No'로 작성하였고,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할 수 있는 양식이며,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학대 예방을 할 수 있는 양식으로 참고할 수 있음.

• Colorado Family Safety Assessment

(<https://www.coloradorpc.org/wp-content/uploads/2017/09/CO-Family-Safety-Assessment-Instructions-.pdf>)

- 아동의 취약성에 '장애'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를 구분하여 아동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있음(p.16, 17.).

이에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서 장애아동학대 사례를 신고접수함에 따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사례판단(피해아동보호계획)을 할 경우, 발달장애 등 장애의 특성에 맞추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또는 추천하는 전문 인력을 포함한 통합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사례판단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한 장애아동 학대사례 판정 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추천하는 전문 인력과의 협의를 통해 사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조치 및 지원 필요 내용 검토	가정복귀	· 해당 단계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여 회복과 예방에 초점을 맞춘 지원, 서비스 연계가 중요	· 행정·형사절차상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충분하게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연계 방안도 충분히 검토 필요	· 하지만 장애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조치 및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다수 존재
	분리보호	· 사각지대에 있는 법, 제도 상황 및 이에 대한 제언 → p.88		

Check 보호체계별 상세한 지원 서비스 내용은

·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 p.76, 81 에서 확인 가능

보호체계	아동	장애
공통점	· 경찰,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고접수 및 조사, 사례판단 등의 학대 대응 업무를 수행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해 상담, 교육, 의료/심리지원, 사법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
차이점	· 사례관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서 협업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근거로 제공되는 각종 서류 무료 발급, 가족지원, 비밀전학,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아동 긴급지원, 주택지원제도 등을 지원	· 사례지원 -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제공되는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가족 휴식지원, 돌봄지원 등),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재활 발달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 장애인 관련자의 동행 등을 지원

피해장애아동 보호계획 작성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를 장애아동 대상 학대사건에 적용할 때 아래의 사항 확인 필요 -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개인의 장애 정도, 주변 환경, 개인 특성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인식 - 특정 반응을 장애에 따른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 - 이러한 경우에 지역의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필요 · 장애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소개 → p.96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후 아동학대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합니다. 피해아동보호계획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여부, 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과 절차,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전반적인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피해아동보호계획은 자체사례회의를 통해 수립하나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아동보호전문요원이나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통합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체사례회의 외에 의학적·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아동학대사례관리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도 가능합니다. 이때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를 활용해야 하고, 그 결과 총점이 4점 이상이면 분리조치를 고려합니다. 피해아동보호계획은 가정복귀와 분리보호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두 가지 상황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상담·교육과 사례관리를 연계해야 합니다.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하거나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아가족지원 서비스(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아가족지원 서비스는 만 12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휴식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단, 돌봄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므로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변경 양식에 있어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아동은 물론 아동학대행위자의 측면에서 장애 관련 특이사항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아동 조치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호체계 유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례관리 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동보호전문기관 [<input type="checkbox"/>] 드림스타트 [<input type="checkbox"/>] 읍면동서비스 연계 [<input type="checkbox"/>] 화랑복지재단 (아보전망: 경기000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000아동보호전문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1호(제지)	[<input type="checkbox"/>] 2호(격리)	[<input type="checkbox"/>] 3호(보호시설 인도) (보호시설명:)	[<input type="checkbox"/>] 4호(의료기관 인도) (병원명:)
응급조치 일시	2020.03.02.	응급조치자	000 경위
[<input type="checkbox"/>] 일시보호(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input type="checkbox"/>] 시설보호(시설명:)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등 보호(아동과의 관계:)	
일시보호조치 일시:			
[<input type="checkbox"/>]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input type="checkbox"/>] 1호(상담·지도)	[<input type="checkbox"/>] 2호(친인척 위탁)	이동 양육상황 점검 주기	[<input type="checkbox"/>] 개월
[<input type="checkbox"/>] 3호(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4호(아동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5호(전문치료기관·요양소)	[<input type="checkbox"/>] 6호(일방)	원가정 점검 주기	[<input type="checkbox"/>] 개월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호조치 일자			
보호의뢰 기관	기관(시설)명: 기관(시설)종류:		
[<input type="checkbox"/>]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input type="checkbox"/>] 임시보호명령	
청구일자	[<input type="checkbox"/>]	청구(결정) 법원	[<input type="checkbox"/>]
결정일자	[<input type="checkbox"/>]		
결정결과	인용 [<input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호(퇴가·격리)	[<input type="checkbox"/>] 2호(점근금지)	[<input type="checkbox"/>] 3호(전기통신금지)	[<input type="checkbox"/>] 4호(보호위탁)
[<input type="checkbox"/>] 5호(치료위탁)	[<input type="checkbox"/>] 5의2호(상담·치료위탁)	[<input type="checkbox"/>] 6호(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7호(친권행사 제한·정지)	[<input type="checkbox"/>] 8호(후견인권한 제한·정지)	[<input type="checkbox"/>] 9호(의사표시 없음결정)	
아동학대행위자 조치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속관찰			
[<input type="checkbox"/>] 법적조치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고발	[<input type="checkbox"/>] 고소	[<input type="checkbox"/>] 인자수사	
사건담당 경찰서(검찰)	사건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수사종	[<input type="checkbox"/>] 입건 전 조사종결 [<input type="checkbox"/>] 송치
[<input type="checkbox"/>]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input type="checkbox"/>] 1호(격리)	[<input type="checkbox"/>] 2호(점근금지)	[<input type="checkbox"/>] 3호(전기통신금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15조)			
요청(신청)일자	[2020.03.03.]		
결정일자	[2020.03.10.]		
결정결과	인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결정 법원	
[<input type="checkbox"/>] 1호(퇴가·격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2호(점근금지)	[<input type="checkbox"/>] 3호(전기통신금지)	[<input type="checkbox"/>] 4호(친권·후견인 제한·정지)
[<input type="checkbox"/>] 5호(상담·교육)	[<input type="checkbox"/>] 6호(의료기관 등위탁)	[<input type="checkbox"/>] 7호(유치장·구차소 유치)	
[<input type="checkbox"/>] 친권 제한·상실(아동복지법 제18조)			
[<input type="checkbox"/>] 친권행사 제한	[<input type="checkbox"/>] 친권상실		

[기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차하지 않은 경우)]			
[]타 시설 또는 상담소 (시설 또는 상담장)	[]가출	[]이외()	
[가정박귀]			
종료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Ⅲ. 대상자 지원 정보				
대상자 육구 (육구조사결과)	아동의 육구(우선순위)			
	[V]안전	[]건강	[V]일상생활 유지	[V]가족관계 []사회적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대상자 육구(우선순위)	보호자의 육구(우선순위)			
	[V]안전	[]건강	[V]일상생활 유지	[V]가족관계 []사회적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대상자 지원 계획	개입필요 육구-문제	장기목표	단기목표	서비스명
	아동안전	피해아동 보호체계 내 안정감 강화	피해아동 심리적 불안감 해소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가족기능강화	피해아동 보호체계 안정성 확립	친부 알콜 문제 검사 및 치료	심리검사
	가족기능강화	피해아동 보호체계 안정성 확립	친모 보호자 역할 강화	부모상담
	가족기능강화	학대발생 위험요인 제거	친모 경제적 어려움 해소	취업알선, 긴급생계비 지원
가정박귀 지원계획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융지급 []기타 ※ 중복체크 가능			
담당자조건	자원 내용			
	이혼한 친부에 의한 정서학대 사례로 피해아동이 현재 보호체계(친모+계부)에서 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보호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는 부재함 이에 따라 현 보호체계에서의 안정적인 보호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사과정 중 친부에게 이혼전으로의 사례연계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우호적인 편은 아니었으므로 사례관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립일	2022. 10. 12		통보일	2022. 10. 13
소속 00사정 00과	직급(직위) 주무관		성명	한00 (서명 또는 인)
결재자	김00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2023)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일부 발췌. p.126-127.

5)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 행정절차상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p.76 · 형사절차상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p.81 · 장애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소개 → p.96

<p>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응급조치 가능(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 분리(일시보호조치) 가능(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가정형 보호가 어려울 경우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의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장애아동이 부족한 사정으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학대 대응 현장 중심자의 관심 필요 • 보호체계를 변경할 때에는 아동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eck 위탁보호 시 아동에게 제공되는 '권리장전의 예' → p.69
<p>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p>	

우선,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적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시설보호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시설에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이 아닌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복지법」 외 타 법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 등 보호체계를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호체계에 대한 안내의 예시, p.69). 그 외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변경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 제공, 학대행위자 등에 보호사실 고지, 가정형 보호체계 우선 고려, 보호 상황 점검,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호체계를 변경함에 있어 유의할 것은, 피해아동 또는 행위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탁보호 시 아동에게 제공되는 '권리장전'의 예

안전과 돌봄

위탁보호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서 나는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1.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 들을 권리
 - 내가 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은 무엇인지
 - 나의 형제와 자매를 포함하여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가 선생님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2. 가능한 한 가정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돌봄과 치료를 받을 권리
 - 이것은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살 권리를 말합니다.
 - 그리고 나는 다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존중받으며, 필요에 따라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3. 내가 살고 있는 장소의 규칙에 대해 들을 권리
4.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방임, 착취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5. 나와 관련된 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들을 권리
6.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출처: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CPS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Foster Care, DFPS -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Foster Care(2023)

보호체계 변경 시 피해아동을 위한 조치로 즉각 분리(일시보호조치), 응급조치, 보호가 가능하고,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등),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미 개입하고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분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경찰과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가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즉각 분리(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급조치라 함은,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피해아동

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와의 격리, 3)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 4)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동학대 범죄 현장 등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응급 조치로 장애아동을 분리할 수 있으나, 기간이 72시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응급조치 종료 후 피해장애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또는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 이후 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과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로는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장애인복지법」상의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의 배치는 최소제한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의사와 욕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아동이라 하여 무조건 장애아동 전용쉼터로 배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학대피해 당사자인 비장애 형제자매가 있다면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과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안정감 및 피해회복의 측면에서 두 아동에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 분리보호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나 동의란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아동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성폭력쉼터, 장애인쉼터 등에 보호조치한 후 원래의 보호자에게 돌아가는 경우, 즉 보호종결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및 지원이라 함은 재학대 발생 및 안정적 생활 여부 등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고, 피해회복에 필요한 복지지원, 의료지원, 사법지원 등을 실시함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아래 사례종결에서와 같이 장애아동 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포함됩니다.

체크리스트

Q. 신체장애아동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방법은 확인되었나요?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도전행동이 있나요? 발달장애아동은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나요?

① 장애아동이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일상생활의 지원에 대하여 각각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이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장애아동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인지장애가 있는 장애아동에게 낮은 환경과 낮은 사람은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도전행동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오히려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고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도전행동으로 불편함을 표시하는 경우의 지원도 어렵지만, 자신의 욕구를 숨기는 경우 정서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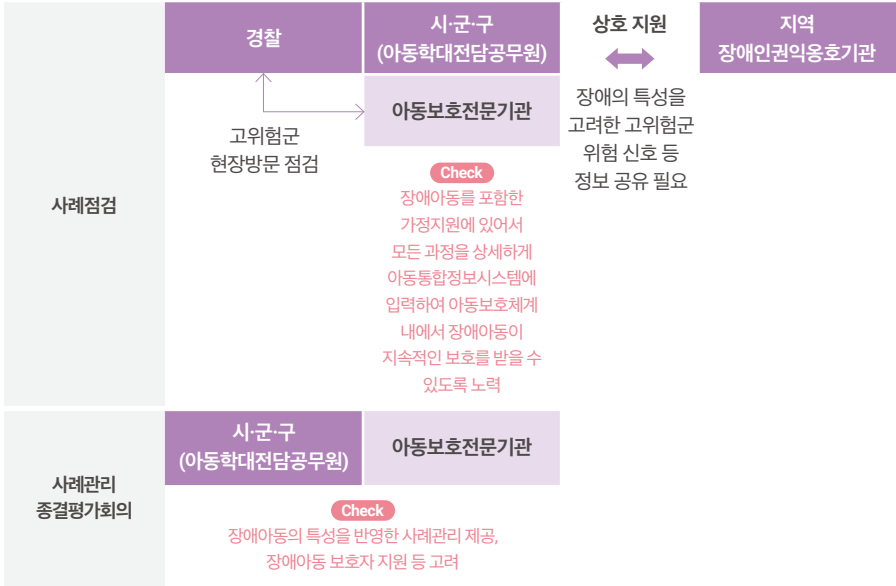
Q. 장애아동의 분리조치 이후 교육방법은 결정되었나요?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이 중단되면 단순히 학습을 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와 관련한 인지활동과 신체활동이 중단되는 기간만큼 퇴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분리조치 진행 시 공백이 생기지 않는 교육환경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장애아동과 주변 관련자들의 관계는 확인되었나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아동을 지켜본 사람들의 의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자들을 통해 분리조치 과정에서 장애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주변에 아동과 관계를 지속해온 학교교사, 치료실 등 이용하던 기관의 교사, 활동지원사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장애아동과 어느 정도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사례관리 상황 확인 및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가 통보한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과정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때 특이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지자체와 공유하고, 아동학대 외 복합적 문제를 가진 사례의 경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이 연계되도록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침에 따라 현장 방문점검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사례점검을 통해 이후 학대 재발위험 사유가 감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피해아동이 안전한 상태가 지속 유지되어 더 이상 사례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사례관리 종결평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3개월간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의 안전을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례회의 등을 지속하며, (장애아동 양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 양육지원 참고자료

•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온맘'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종합시스템이며,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맘 :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nise.go.kr)

• 현장특수교육 웹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로 장애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장특수교육 웹진 : 국립특수교육원(nise.go.kr)

• 세이브더칠드런 부모 프로그램: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아동심리학자인 조안 듀랜트 박사가 개발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는 현재 전 세계 30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한국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돕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며,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책 : 부모책자.pdf(sc.or.kr)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미리보기 영상 : <https://youtu.be/vsBv9fEsa1A?feature=shared>

• Supporting Par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Good Practice Guidance. Easy Read

영국의 '체인지피플(Change People)'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만드는 인권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학습장애를 가진 부모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읽기 쉬운 정보지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학습장애를 가진 부모와 의사소통하기, 평가와 지원, 서비스 등에 있어 모범 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쉬운 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Changepeople 발간 가이드라인 : https://www.changepeople.org/Change/media/Change-Media-Library/Project%20Media/CHANGE_good_practice_guidance_2006.pdf

• Utah Youth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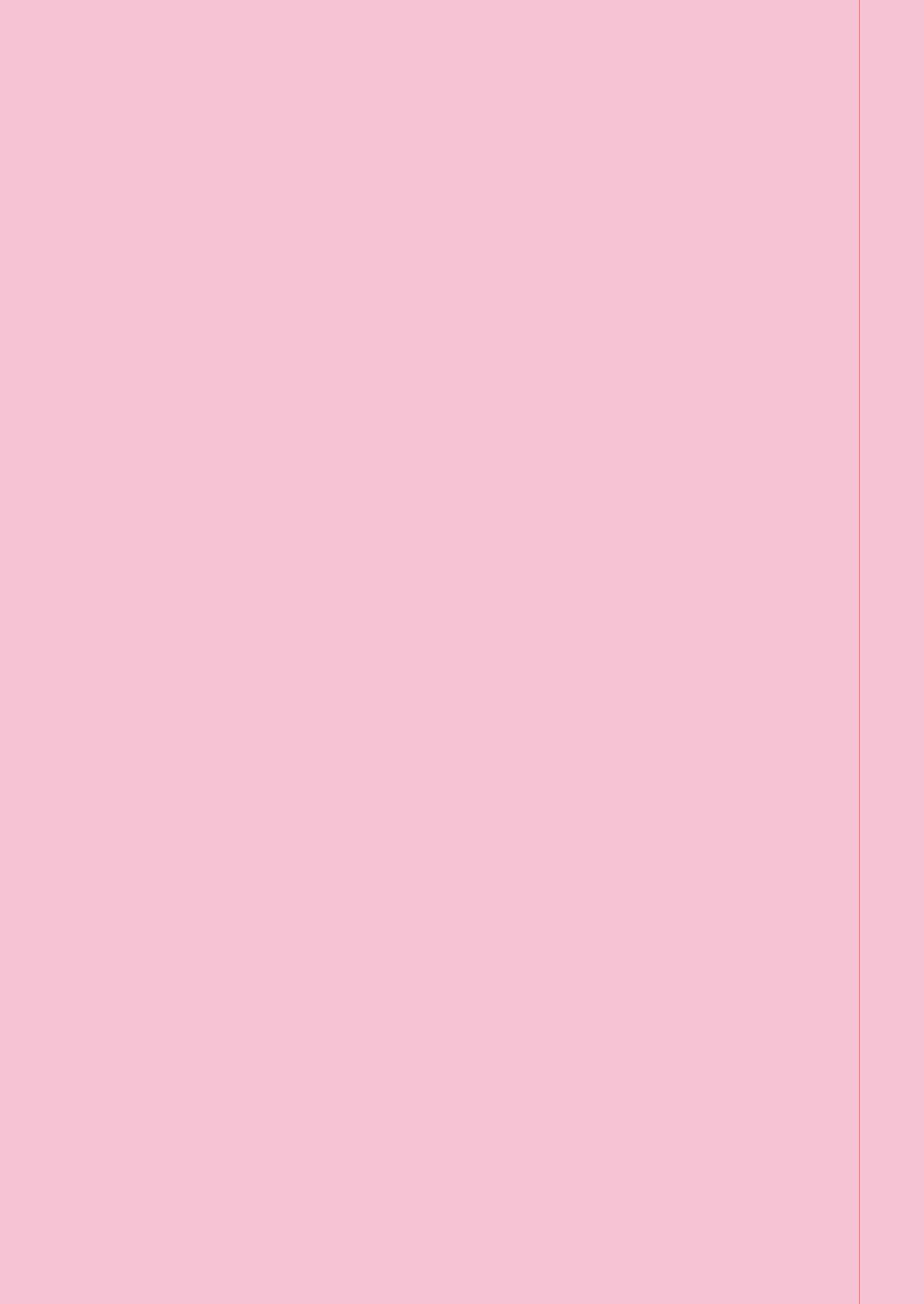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 양육을 위해 'Smarter Parenting'이라는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양육 방법, 놀이, 의사소통, 칭찬 방법, 행동 교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팟캐스트도 함께 운영하여 양육에 필요한 이해와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 'Try Foster Parenting Part-Time' 제도를 활용하여 단시간 위탁양육이 가능한 위탁부모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위탁을 맡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위탁부모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https://www.smarterparenting.com/behavioral-issues/#>

<https://youthvillage.org/try-foster-parenting-part-time/>

V.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1. 행정절차상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³⁷

1)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각종 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³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과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의 확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족들에 대한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³⁹ 이때 지원 여부의 결정,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⁴⁰

한편, 발달장애아동의 가족은 가까운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보호·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로·직업·전환교육 및 고용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⁴¹ 여기에는 발달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대상의 성교육도 포함됩니다.⁴²

또한 발달장애아동과 동거하는 보호자는 각 시군구에 신청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고,⁴³ 발달장애아동 및 그 가족은 가까운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가족 휴식지원, 돌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⁴⁴ 휴식지원 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아동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도 받을 수 있습니다.

37. 이 부분의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2022)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8. 「아동복지법」 제22조의3

39.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항

40.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항

41. 「발달장애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42. 「발달장애인법」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43. 「발달장애인법」 제31조

44. 「발달장애인법」 제32조

3) 비밀전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⁴⁵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도 같습니다.⁴⁶ 이때 교육감, 교육장 또는 각 학교의 장은 이러한 조치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⁴⁷ 또한 만약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각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⁴⁸

4)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직계존속이거나 동거하는 친족이고 피해아동이 시설 등에 분리조치되어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한 경우, 피해아동의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⁴⁹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⁵⁰

45. 「아동복지법」 제29조 제6항

4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

4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4항, 「가정폭력방지법」 제1조의3 제5항

48.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4항

49.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50.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5)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을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의 대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⁵¹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보호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⁵²

6) 의료비 환급 및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아동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및 그 대리인이 의료비 영수증과 상담사실확인서를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에 제출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피해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아동은 치료비,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검진, 진단 및 치료, 재활치료, 정신건강 교육, 정서발달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긴급지원(가정폭력 피해아동)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⁵³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 「아동복지법」 제29조의6, 같은 법 시행령 26조의9

5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9 제4항

53.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8) 복지서비스 연계

학대피해아동의 가정이 빈곤·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읍면동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적인 복지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복지급여, 민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택지원제도(가정폭력 피해아동)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⁵⁴

10)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재활·발달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⁵⁵ 이에 따라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 유무를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지원도 가능합니다. 정밀검사를 위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검사 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중진센터로부터 발달장애인의 발달재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⁵⁶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⁵⁷ 2023년 6월 기준, 8개 시도에 총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4.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55. 「발달장애인법」 제23조 제1항

56. 「발달장애인법」 제24조, 「장애아동복지법」 제21조

57. 「장애아동복지법」 제21조 제3항

11) 보조기구지원

장애아동은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⁵⁸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로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아동의 부모(성인)에게 발달장애가 있어 법률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비용 지원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⁵⁹ 다만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보다는 대체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당사자와 의논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 신청을 하더라도 후견인의 권한이 제한적인 '특정후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 또는 부모가 발달장애로 인하여 은행 계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후견제도 대신 발달장애인 계좌 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⁶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을 계좌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계좌 관리를 지원합니다.⁶¹

58. 「장애아동복지법」 제20조

59. 「발달장애인법」 제9조

60. 「발달장애인법」 제21조

61.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2. 형사절차상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

1) 국선변호사의 선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또는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 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⁶²

검사는 2021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모든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⁶³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집니다.⁶⁴

2) 국선보조인의 선임

학대피해아동에게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외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아동의 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⁶⁵ 국선보조인은 피해아동의 진술 및 활동을 보조하는 등 더욱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62.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제1항

63.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6항

64.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5항

65. 「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 제1항

3) 진술조력인의 선임

진술조력인은 피해아동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아래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⁶⁶
- ②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혹은 참고인,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⁶⁷
-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⁶⁸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신체적장애’는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에 의하여, ‘정신적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 함묵증, 진술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한 아동의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의 선정이 가능합니다.⁶⁹

진술조력인은 법원의 재판 과정과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모두에서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을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변환하는 등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② 피해아동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진술조력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아동 가까이에서 착석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합니다.

6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67.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36조 및 제37조

68.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69.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4) 신뢰관계인의 동석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신문받는 경우,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⁷⁰ 사법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⁷¹ 「장애인복지법」도 위 조문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⁷²

한편,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⁷³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판에 동석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⁷⁴ 이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⁷⁵ 따라서 피해아동이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70. 「아동복지법」 제21조 제2항

71. 「아동복지법」 제21조 제3항

7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2항 및 제3항

7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74.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3항

75.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5) 장애인 관련자의 동행⁷⁶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에서도 이러한 장애인 관련자가 장애인인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동석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을 돕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⁷⁷ 따라서 피해아동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여 장애인 관련자를 대동할 경우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6)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⁷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원고, 피고, 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사전에 사법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른 편의제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 시스템, 이동을 위한 휠체어, 휴식시간의 보장 등).

76.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2021), p.138.

7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항

78.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2021), p.195.

7) 피해아동의 진술과 관련한 지원제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⁷⁹

- ① 피해아동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② 피해아동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③ 피해아동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④ 피해아동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충분히 설명할 것
- ⑤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

가) 피해아동 진술 영상녹화

피해아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장치로 녹화(녹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하 '영상녹화'라고 합니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⁸⁰

나) 증거보전의 특례

피해아동이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⁸¹

79.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29조

80.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81.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41조

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피해아동의 진술이 담긴 위 영상녹화물은 다음의 경우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⁸²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피해아동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법원의 재판 단계

피해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가)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의 동석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으로 신문받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술조력인 및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조력하도록 선정합니다.⁸³

나) 증인지원시설 운영

현재 법원에는 대부분 증인지원시설이 설치 운영 중이므로, 피해아동 역시 재판 전후에 피고인 또는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고 보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증인지원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⁸⁴

82.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83.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9조

84.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로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32조

다)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피해아동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를 받은 검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⁸⁵

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법원은 피해아동을 법정에서 출석하게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정에서 아닌 중계시설에 동석하도록 합니다.⁸⁶

85.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2

86.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6조

3.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사각지대에 있는 법, 제도 상황 및 이에 대한 제언

1)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절차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지원 내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관련 법령에 따른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절차와 서비스 전달체계,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절차와 서비스 전달체계는 분절되어 있어, 가용 자원 간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초기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발견하였을 시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에서 어떠한 법령의 적용을 받아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관계법령이나 지침상으로도 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시작되더라도 실무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의 조직과 인력이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동 관점에서의 지원이 소홀해지거나,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의 조직과 인력이 장애 특성과 필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인지적 관점의 지원이 부족한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보호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남게 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피해를 장애인학대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장애아동 학대피해 발견 시 필요한 조치 및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도,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 착취, 감금,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선언적으로 명시하면서 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지원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관련 법 제도에서도 장애를 비롯하여 특수한 욕구나 필요가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학대 지원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범죄 현장 출동 의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 후견인 선임, 보호명령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 어떠한 특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장애아동은 어떤 지원체계를 통하여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⁸⁷ 나아가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 조사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사후관리,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피해아동에 대한 전담 의료기관 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관련 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학대피해 비장애아동과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피해아동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학대피해 비장애아동과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원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7.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2) 개선방안

(1) 장애 관점의 피해아동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매뉴얼 개정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아동에 대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애아동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피해아동보호계획서에는 아동이 처한 상황 및 특성, 아동의 욕구 등을 판단하는 항목 외에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 여부 및 그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동복지시설 외에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사례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내지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 등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장애인시설에 입소된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제도화

아동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지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⁸⁸ 수요 대비 이용할 수 있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가정과의 분리조치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 분리조치 결정이 있더라도, 성인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대개는 성인장애인을 주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아동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회복지원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 및 전문 인력의 확보

각 시설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보호조치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에 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강화하거나, 학대피해아동 지원에 대한 예산 확충,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설 및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장애인시설 보호조치 시, 모니터링 제도화

아울러 현재는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조치된 아동과 달리 장애인시설로 보호조치된 장애아동이 퇴소하는 경우에는 사후 모니터링이나 복귀 이후의 점검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가정 복귀 이후 지속적인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대 재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팀 등이 사후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장애인학대 대응기관과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협업 지침 마련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의무로서 피해장애아동쉼터로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⁸⁹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피해가 발견된 경우 응급조치를 위해 연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피해장애아동쉼터 외에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함께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지 경찰관의 입장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어떤 기관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각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논의를 통하여 개별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대응기관과 장애인학대 대응기관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실제 사례에서의 협업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기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아동학대 대응 협업과 관련한 지침 및 업무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원에 관한 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학대가 이뤄진 장소, 학대피해아동의 나이, 보호자 등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법」과 「장애인학대방지법」의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참고하여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에 산발되어 있는 지원체계를 연계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8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4)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편, 「아동복지법」 제28조의2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아동학대 대응기관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정보제공 기관에서 누락되어 있어, 장애아동 사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발견되더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 정보를 공유받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아동 관련 대응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정보제공 기관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한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협의하에 필요한 조력을 함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수사 및 재판 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

현행법상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학대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진술조력인 양성이 부족하여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진술조력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조력 과정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 변호사 등이 장애아동의 장애의 특성 및 아동으로서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장애아동 학대 통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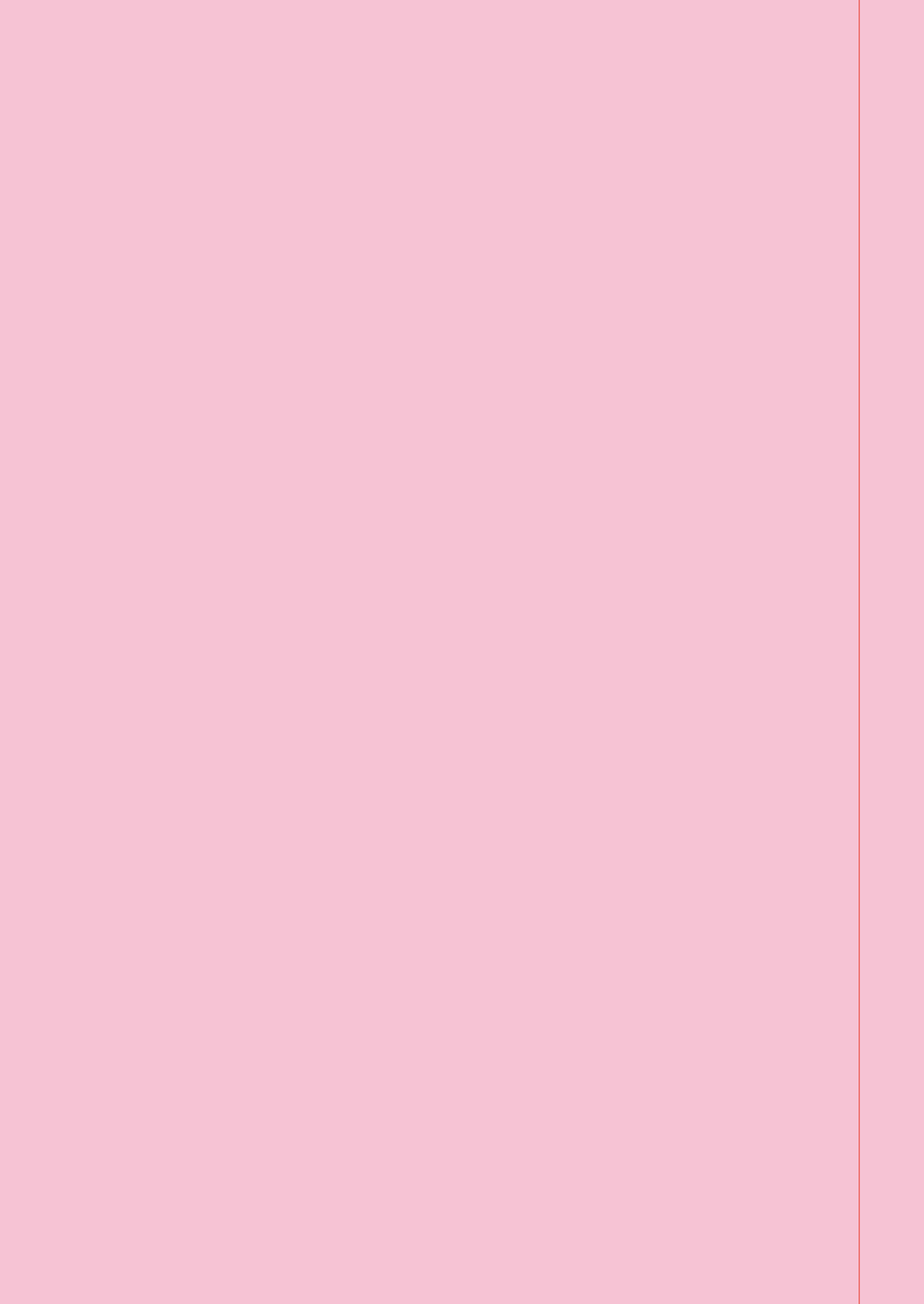
나아가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현황 및 그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통계를 수집하고 공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장애아동학대 통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느 기관도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각각의 신고절차가 연계되어 있지 못하여 장애아동 학대피해의 현황,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제도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현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보호자 지원, 학대방지 교육 등 예방적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아동 중심의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무엇보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지원체계를 기본 체계로 하고 아동과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예방-신고-개입-조치-사후관리의 전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적합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관계부처와 기관이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의 내용과 역할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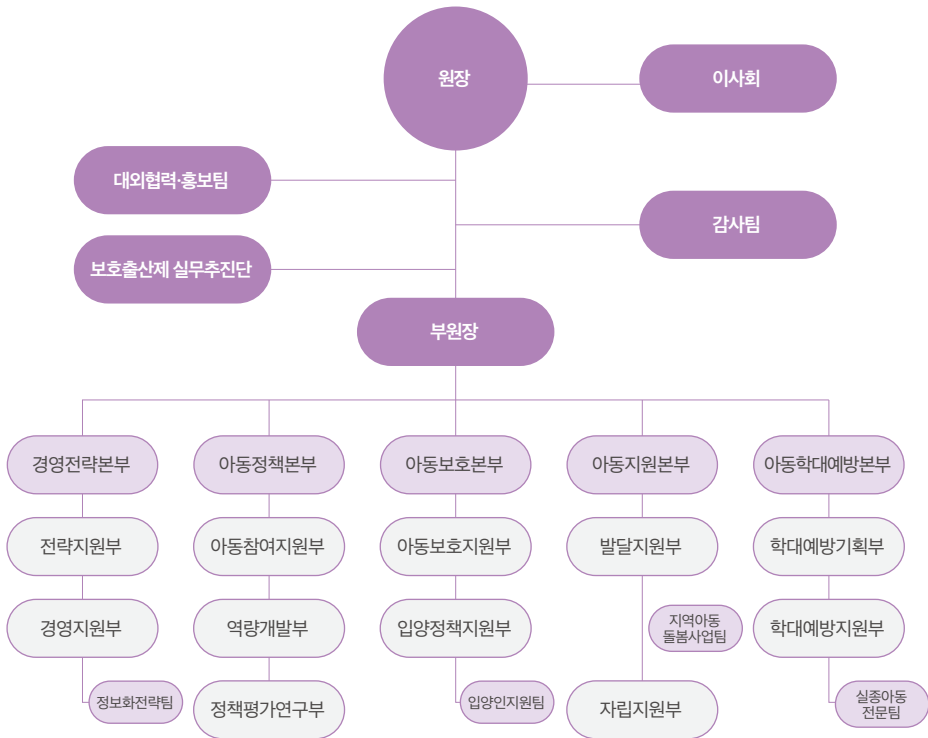
장애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소개



1.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근거하여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를 통해 아동 관련 사업소개(아동보호, 가정정보호, 아동자립, 아동권리 증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기관 현황을 통해 지자체 사업 담당자, 기관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조직 구성>



(2024년 3월 기준,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 아동보호전문기관

2024년 3월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93개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지원, 피해아동 상담치료, 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와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아동복지기관 현황'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24년 3월 기준)>

번호	시도	시군구	센터명	주소	연락처
1	서울 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02-2040-4242
2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별관 1층	02-2247-1391
3		강서구	서울서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02-3665-5183
4		은평구	서울서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은평구 은평로 210, AGM 빌딩 4층	02-3157-1391
5		영등포구	서울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07호	02-842-0094
6		도봉구	서울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도봉로 노해로54길 84	02-923-5440
7		마포구	서울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마포구 신수로46, 공구빌딩 4층	02-422-1391
8		송파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송파구 동남로 103, 4층	02-474-1391
9		노원구	서울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5층 아동청소년과	02-974-1391
10		성북구	서울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성북구 정릉로 242, 3층	02-2039-5472
11	부산 광역시	진구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1	010-3269-0931
12		서구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까치교개로 183, 아동보호종합센터	051-240-6300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903호	051-715-1391
14		북구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 북구 금곡대로 268, 4층 405, 406호	051-711-1391
15		동구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	051-791-1360
16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 중구 태평로 302	053-422-1391
17		달서구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 달서구 조암로 40, 한영빌딩 A동 6층	053-623-1391
18		북구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 북구 동북로 55	053-710-1391
19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 동구 송화로52번길, 14-3	032-721-6388
20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9	032-434-1391
21		계양구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삼환1빌딩 505, 506호	032-515-1391
22		남동구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04, 홀트인천복지센터 4층	032-424-1391
23		서구	인천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 서구 완정로 153, 10층 이레메디컬 센터	032-563-1391
24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 서구 내방로 216	062-385-1391
25		북구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 북구 대자로 97-2	062-675-1391
26	대전광역시	북부	대전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83, 국민타운 4층	042-710-0735
27		중구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 중구 어덕마을로 156	042-254-6790
28		서구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 서구 계백로 1135, mk빌딩 707, 708호	042-716-2020



29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 중구 성안3길 21	052-245-9382
30		남구	울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 남구 돌질로355번길 23	052-256-1391
3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시 새롬로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201호	044-864-1393
32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 지젤레이크타운 802~804호	031-275-6177
33		포천시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109번길 13, 메가프라자 3층 307호	031-8089-8391
34		수원시	경기도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	031-245-2448
35		의정부시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가금로 29, 지승프라자 403~404호	031-928-6474
36		성남시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	031-756-1391
37		고양시	고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7번길 11, 삼정플라자 7층	031-966-1391
38		부천시	부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길주로 319, 골든타워 3층 302호	032-662-2580
39		남양주시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다남프라자 204호	031-592-9818
40		안산시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35, 402호	031-402-0442
41		용인시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802~804호	031-275-6177
42		시흥시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 2층	031-316-1391
43		평택시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소사1길 33	031-652-1391
44		수원시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47, 2층	031-8009-0080

45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광명시 금하로 526, 4층	02-897-1577	
46		안양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9, 계양빌딩 7층	031-468-9821	
47		구리시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아차산로 453, 4층	031-523-3163	
48		군포시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	031-391-1391	
49		경기광주	경기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시 행정타운로 64-2, 1층	031-8027-0171	
50		의왕시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왕시 백운호수로5길 8, 2층	031-360-1391	
51		파주시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407호	031-839-0940	
52		화성시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송현빌딩 4층	031-227-1310	
53		오산시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시 경기대로 105, 로얄프라자 5층 503호	031-8077-9610	
54		김포시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포시 김포한강4로 543, 804호	031-8084-3891	
55		양주시	경기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양주시 삼송동 58번길 108-47,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M2층	031-856- 9001~9003	
56		강원도 특별 자치도	춘천시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	033-244-1391
57			강릉시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솔울로5번길 33	033-644-1391
58			원주시	강원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6, 해성빌딩 2층	033-766-1391
59			동해시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	033-535-5391
60	횡성군		강원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횡성군 횡성읍 섬강로 252, 1층	033-344-1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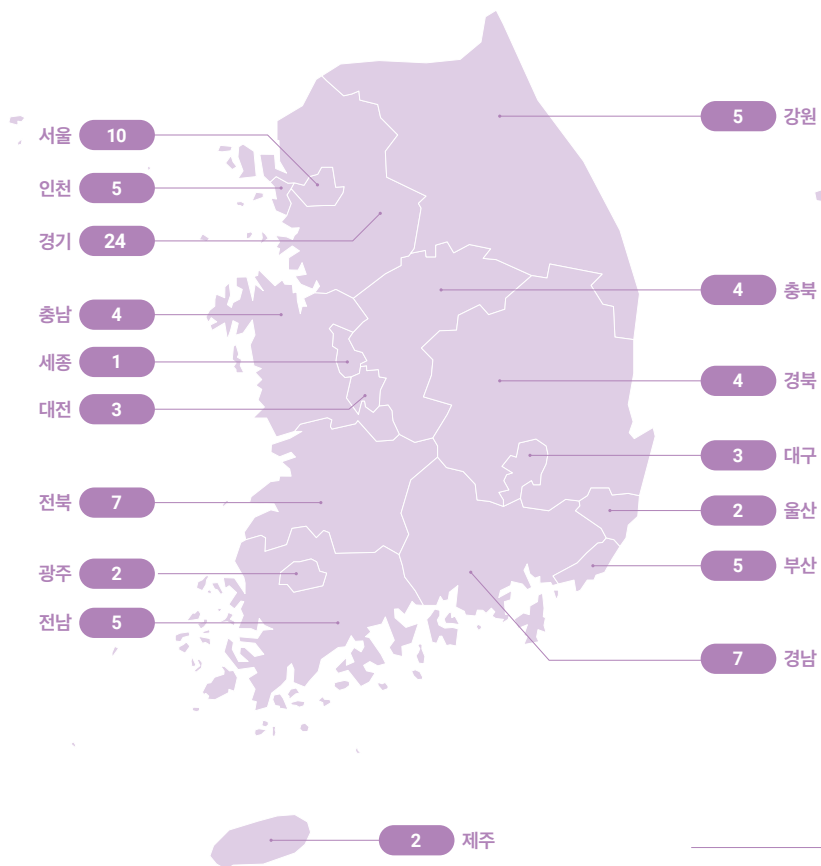
61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202번길 66-1	043-216-1391
62		제천시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 의림대로6길 37, 2층	043-643-0943
63		옥천군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	043-731-3685
64		진천군	충북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천군 진천읍 문화4길 29, 3층	043-535-1391
65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 1층	041-578-2655
66		논산시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중앙로 384번길 55	041-734-6640
67		홍성군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4-1, 3층	041-635-1106
68		아산시	충청남도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산시 용화고길79번길 36, 601호	041-546-1391
69	전라북도 특별 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읍시 복면 정읍북로 603	063-700-7121
70		전주시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1층	063-283-1391
71		익산시	전라북도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인북로 112, 4층	063-852-1391
72		군산시	전라북도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시 백토로 202, 201호	063-734-1391
73		남원시	전북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시청로 41, 2층	063-635-1391
74		전주시	전주덕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5-15, 3층	063-715-1371
75		전주시	전주완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전릉로 126, 4층	063-717-1371
76		전라남도	해남군	전남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4-9, 3층



77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삼산로 92-5	061-753-5125
78		목포시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본소: 목포시 영산로 635, 석현빌딩 3층 분소: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92번길 19, 4층	본소: 061-285-1391 분소: 061-284-1391
79		나주시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송월3길 28, 4층	061-332-1391
80		화순군	전남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순군 화순읍 벽라1길 41	061-870-7200
81	경상북도	경주시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	054-745-1391
82		안동시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퇴계로 149-3	054-853-1391
83		포항시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 3층(대잠동)	054-284-1391
84		구미시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054-455-1391
85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시 계룡로11길21	055-736-1391
86		창원시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본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분소: 거제시 옥포로25길 16	본소: 055-244-1391 분소: 055-635-9752
87		진주시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모덕로181번길 6, 2층	055-757-1391
88		김해시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	055-322-1391
89		창원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 1층	055-713-1390
90		양산시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시 동면 석산5길 4	055-367-1391
91	진주시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창렬로162번길 9, 1층	055-762-1391	



92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원노형로 59, 3층	064-712-1391
93		서귀포시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1-2층	064-732-1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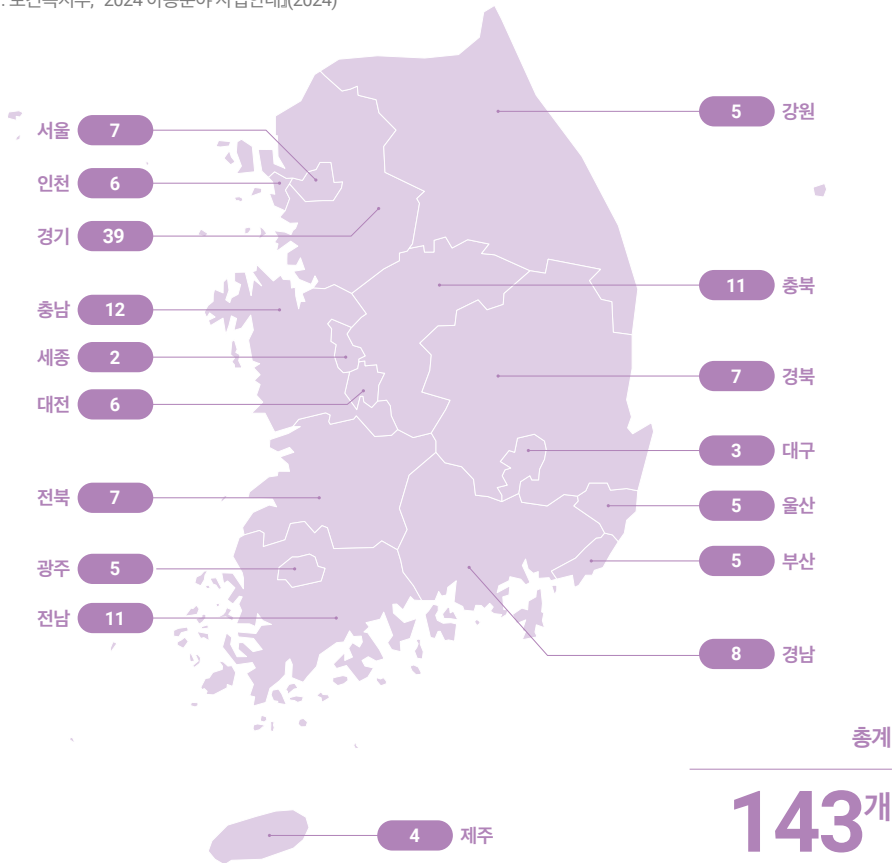


3.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후 응급 및 긴급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입니다. 지자체는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제공, 교육 및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쉼터를 지정하며, 피해아동은 평균 9개월 이상 쉼터에 머무릅니다. 2023년 11월 기준,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43개소로 쉼터의 기능상 비공개 시설입니다.

<지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2023년 11월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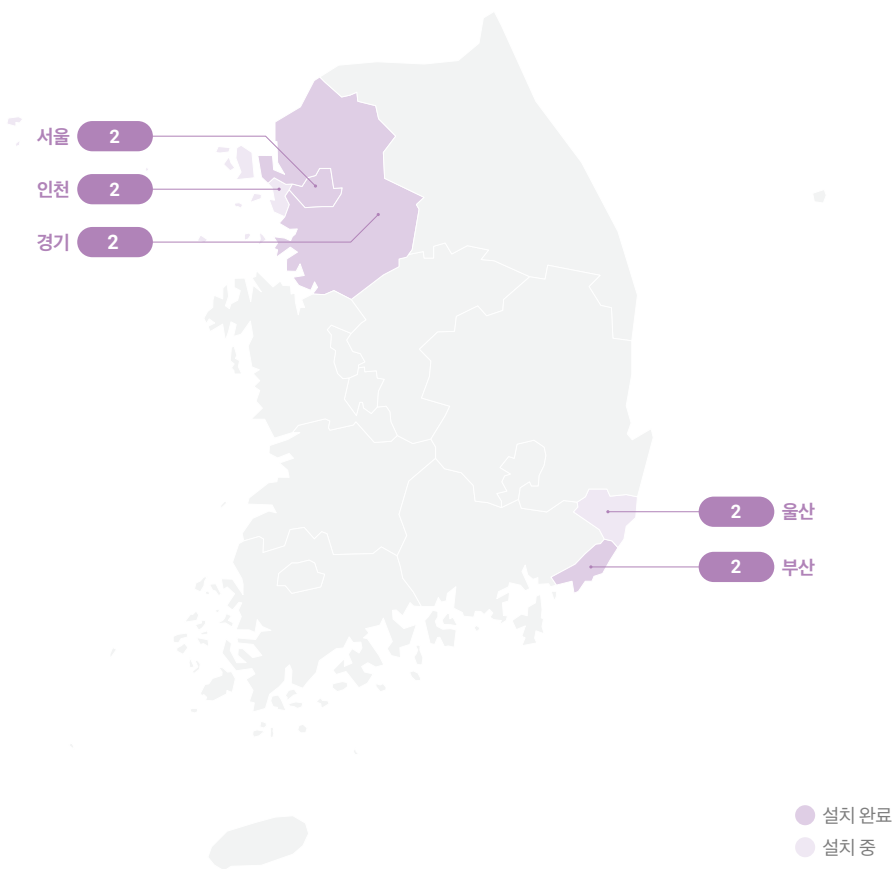
4. 학대피해장애아동 전용쉼터

학대피해를 당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일시보호하는 비공개 시설로, 학대피해장애아동 전용쉼터의 입소는 해당 시·군·구의 아동학대 전담 부서 또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역별 학대피해장애아동 전용쉼터 현황(2023년 12월 기준)>

2023년 12월 기준 총 6개소 운영 중(서울, 경기, 부산 각 2개소(남아쉼터, 여아쉼터))이며, 4개소(울산, 인천 각 2개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출처: 정보공개청구(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4.01.10. 정보공개)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역 현황과 상세한 내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https://www.naapd.or.kr>)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서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02-6951-1790
2	서울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02-3453-9527
3	부산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	051-715-8295
4	대구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	053-716-8295
5	인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01호	032-425-0900
6	광주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062-716-1633
7	대전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	042-631-5667
8	울산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	052-260-8295
9	세종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종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21호	044-905-8295
10	경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08호	031-287-1134
11	경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6호	031-851-1007
12	강원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	033-264-8296
13	충북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호	043-287-8295



14	충북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주시 개고개로 166, 3층	043-847-8295
15	충남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천안법조플라자 301호	041-551-8295
16	전북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11-10, 경희공빌딩 5층	063-227-8295
17	전남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	061-285-8298
18	경북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054-282-8295
19	경남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워 210호	055-603-8295
20	제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	064-900-9695

6.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복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 후활동 서비스, 부모교육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 긴급돌봄시범사업, 부모상담지원사업, 권리구제, 공공후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 18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상세한 사업 내용 및 맞춤형 지원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서울	중앙지역센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름센터 7층	02-3433-0743
2	서울	서울지역센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9, 서원빌딩 4층	02-2135-3635
3	인천	인천지역센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	032-715-4363
4	경기	경기지역센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	031-548-1393
5	세종	세종지역센터	세종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044-414-9172
6	충북	충북지역센터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센트럴칸타워빌 161호	043-716-2160
7	충남	충남지역센터	천안시 서북구 부성7길 39-5, 태영빌딩 5층	041-415-1215
8	대전	대전지역센터	대전 서구 둔산서로 69, 한국야구르트 5층	042-719-1085
9	전북	전북지역센터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76, 청옥빌딩 3층	063-714-2610
10	광주	광주지역센터	서구 상무시민로 103, 상무비즈센터 302호	062-714-3352
11	전남	전남지역센터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4층	061-802-1062
12	강원	강원지역센터	춘천시 옥산고길 17-8	033-817-2357



13	경북	경북지역센터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601호	054-805-7310
14	대구	대구지역센터	대구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6층	053-719-0340
15	울산	울산지역센터	울산 중구 변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 6층 B-4호	052-710-3154
16	경남	경남지역센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 프라자 608호	055-716-2390
17	부산	부산지역센터	부산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8층 808호	051-714-7360
18	제주	제주지역센터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3층	064-803-3714

7. 스마일센터(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이며,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발생 후 신변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스마일센터 홈페이지(<https://resmile.or.kr>)를 방문하면 상세한 사업 안내와 함께 PTSD와 우울증 자가진단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와 관련된 전문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시도	기관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1	서울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서울 마포구 성산로8길 6	gsg@resmile.or.kr	02-333-1295
2	서울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서울 송파구 풍성로22길 37	ess@resmile.or.kr	02-472-1295
3	서울	서울서부스마일센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8길 6	wss@resmile.or.kr	02-332-1295
4	부산	부산스마일센터	부산 금정구 금샘로 371	bss@resmile.or.kr	051-582-1295
5	인천	인천스마일센터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272	ics@resmile.or.kr	032-433-1295
6	광주	광주스마일센터	광주 동구 구성로 163	gjs@resmile.or.kr	062-417-1295
7	대구	대구스마일센터	대구 수성구 만촌로 148	dgs@resmile.or.kr	053-745-1295
8	대전	대전스마일센터	대전 서구 갈마로 139	djs@resmile.or.kr	042-526-1295
9	강원	춘천스마일센터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7	ccs@resmile.or.kr	033-255-1295
10	전북	전주스마일센터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87	jjs@resmile.or.kr	063-246-1295
11	경기	수원스마일센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8	sws@resmile.or.kr	031-235-1295
12	경기	의정부스마일센터	의정부시 평화로 578	uis@resmile.or.kr	031-841-1295
13	충북	청주스마일센터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112	cjs@resmile.or.kr	043-218-1295
14	울산	울산스마일센터	울산 중구 성안로 218	uss@resmile.or.kr	052-707-1295
15	경남	창원스마일센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02번길 14	cws@resmile.or.kr	055-546-1295
16	제주	제주스마일센터	제주시 동광로1길 9	jes@resmile.or.kr	064-742-1295
17	전남	목포스마일센터	목포시 용당로 300	mpos@resmile.or.kr	061-277-1295

8. 해바라기센터(아동·청소년형)

해바라기센터(아동·청소년형)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피해 후유증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 상담실,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 통합형, 위기지원형 센터에 대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1.do).

번호	기관명	주소 및 홈페이지	위탁기관	연락처
1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https://www.child1375.or.kr	연세의료원	02-3274-1375
2	대구해바라기센터	대구 중구 동덕로 125, 5층 http://www.csart.or.kr	경북대병원	053-421-1375
3	인천해바라기센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http://www.sunflowericn.or.kr	가천대 길병원	032-423-1375
4	광주해바라기센터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https://www.forchild.or.kr	전남대병원	062-232-1375
5	경기해바라기센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https://www.sunflower1375.or.kr	분당차병원	031-708-1375
6	충북해바라기센터	충주시 봉현로 222, 보성빌딩 4층 http://www.cnonestop.or.kr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7	전북해바라기센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http://www.jbsunflower.or.kr	전북대병원	063-246-1375
8	경남해바라기센터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본관 지하 1층 https://gnonestop.or.kr	경상대병원	055-754-1375

9.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 일시가정위탁보호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탁 아동과 가정에 양육보조금, 아동용품 구입비, 심리검사 치료비, 자립착각금, 자립수당, 대학진학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정위탁보호는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장애아동을 포함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아동보호비(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2024) 또는 지역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시도	시·군·구	센터명	주소 및 홈페이지	연락처
1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 빌딩 3층 www.seoul-foster.or.kr	02-325-9080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57, 동원빌딩 3층 www.busan.sc.or.kr	051-758-8801
3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대구 동구 아양로 291, 1층 dgfc.sc.or.kr	053-656-2510
4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8층 www.icfoster.or.kr	032-866-1226
5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955번길 1, 동우아스트로오피스텔 3층 301호 www.gjw.or.kr/foster	062-351-1206
6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대전 중구 보문로 246, 804호 www.djfoster.or.kr	042-242-5240
7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울산 남구 중앙로 216, 안강빌딩 4층 ulsan.goodneighbors.kr	052-286-1548
8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 7층 www.gg-foster.or.kr	031-234-3980
9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의정부시 가능동 95, 지승메디컬프라자 7층 www.kgfoster.or.kr	031-821-9117
10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2층 www.fostercare-gangw.on.or.kr	033-255-1406



11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04호 cbfc.sc.or.kr	043-250-1226
12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4층 www.fosterservice.or.kr	041-577-1226
13	전북 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6층 jbfc.sc.or.kr	063-288-7770
14	전라남도	목포시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목포시 해양대학로 28 www.jnfoster.org	061-279-1225
15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	순천시 저전길 84 www.jnefoster.org/jnbd	061-744-1964
16	경상북도	경주시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10-4, 1층 www.gbfooster.or.kr	054-705-3600
17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5층 www.knfoster.or.kr	055-237-1226
18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주시 연삼로 22, 3층 www.jeu-foster.or.kr	064-747-3273

10.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역별, 기관 유형별로 장애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복지관의 자세한 현황, 전화번호 등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http://www.hinet.or.kr>) 내 '복지관 현황'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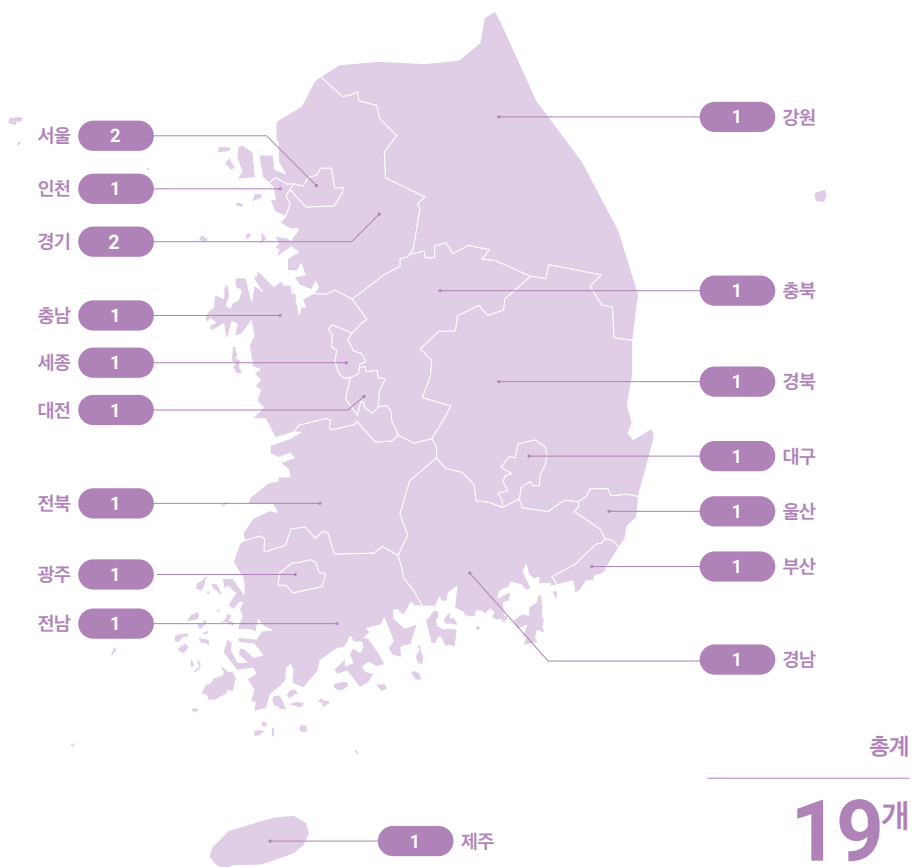
지역	종합	지체	뇌성마비	시각	구분					총계
					청각	발달	지적	여성	기타	
서울	31	3	2	5	3	5	1	1	0	51
인천	8	0	1	1	0	0	0	0	0	10
경기	36	0	1	1	0	1	0	0	0	39
세종	1	0	0	0	0	0	0	0	0	1
충북	11	1	0	0	0	0	0	0	0	12
충남	14	0	0	1	0	0	0	0	0	15
대전	6	0	0	1	1	0	0	0	0	8
전북	14	0	0	0	0	0	0	0	0	14
광주	5	0	0	1	0	0	1	0	0	7
전남	17	0	0	0	0	0	1	0	0	18
강원	8	0	0	0	0	0	0	0	0	8
경북	15	0	0	1	0	0	0	0	1	17
대구	3	0	1	1	1	0	0	0	0	6
울산	4	0	0	1	0	0	0	0	0	5
경남	16	0	0	0	0	1	0	0	1	18
부산	14	0	1	1	0	1	0	0	0	17
제주	3	0	0	1	1	1	0	0	0	6

11. 피해장애인 센터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공간 및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인 센터의 명칭, 위치, 연락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이며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입니다.

<지역별 피해장애인 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2023)



12.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은 장애 유형별·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관련하여 지역별 시설에 대한 상세한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은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홈페이지(<https://www.nise.go.kr/onmam>)의 ‘기관정보’에서 복지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이며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입니다.

1) 서울특별시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2
	시각	3
	지적	1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9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3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82

2) 부산광역시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3
	시각	1
	지적	1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4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2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4

3) 대구광역시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3
	시각	0
	지적	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8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5

4) 인천광역시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2
	시각	1
	지적	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1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1

5) 광주광역시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5
	시각	2
	지적	1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56

6) 대전광역시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1
	시각	1
	지적	8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0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4

7) 울산광역시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0
	시각	0
	지적	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9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9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0
	시각	0
	지적	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0

9) 경기도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8
	시각	4
	지적	8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62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2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2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43

10) 강원특별자치도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1
	시각	1
	지적	1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6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8

11) 충청북도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3
	시각	2
	지적	2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2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6

12) 충청남도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0
	시각	0
	지적	18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6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1

13) 전북특별자치도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4
	시각	1
	지적	3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2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8

14) 전라남도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2
	시각	1
	지적	2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7

15) 경상북도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3
	시각	0
	지적	29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8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1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8

16) 경상남도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2
	시각	0
	지적	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5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1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50

17) 제주특별자치도

시설 구분		시설 현황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	0
	시각	0
	지적	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6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8

기획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지원

세이브더칠드런

집필

강미정, 강솔지, 김남진, 김성연, 김진영,

안정은, 엄선희, 정제형, 최현정

감수

김미옥(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진근석(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디자인

VISTADIA

발행처

세이브더칠드런

발행일

2024. 4. 20.

주소

서울 마포구 토정로 174

웹사이트

<https://www.sc.or.kr/>

대표전화

02-6900-4400

